

2021년 한국아동복지학회 3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일시 2021년 5월 28일 (금) 13:00~18:00

장소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 및 유튜브 실시간 송출

주최 / 주관 한국아동복지학회

후원 아동권리보장원, 굿네이버스, 삼성복지재단, 세이브더칠드런,
아산사회복지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모시는 글

안녕하세요. 한국아동복지학회장 정선욱입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는 1991년 5월 창립 이후,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천과 연구 현장에서 아동복지 및 권리 실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 회원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학회는 30주년을 맞아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로 춘계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을 만큼 많이 논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 아동보호체계를 다시 다루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를 충분히, 제대로 잘 돕는 길은 보호대상아동이 연간 4000명 발생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가 3만명(2019년)이 넘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아동 최상의 이익에 맞는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이론보다는 실천현장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학술대회 1부는, 아동학대 개입단계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아동보호 관련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복지시설 등)의 업무와 역할을 서로 이해하고 그간의 연계 과정을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씨실과 날실로 촘촘히 엮인 아동보호체계를 설계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2부는 행정부(보건복지부), 입법부(국회), 사법부(검찰 등)의 구성원을 종합토론에 모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으로 든든한 토대를 모색, 공유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아동중심으로 하나로 모여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장 정선욱 배상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부의장 김상희입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정선욱 학회장님, 그리고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가 ‘온전한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입니다만, 사실 30년 전 아동복지학회가 창립될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아동인권의 불모지’였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체벌이 만연했고, 빈곤 아동들은 방치되었으며, 부모가 아이를 학대해도 가정 내의 일이라는 이유로 개입 자체를 꺼리는 등 공적인 아동보호체계가 전무했지요.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대 조기발견 - 피해아동 분리 - 가해자 처벌 및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보호가 국가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기존의 민간위탁 위주의 아동보호체계를 공공 위주로 전면 개편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동복지학회가 이론적 뒷받침은 물론 현장과의 소통까지 적극적으로 힘쓰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제가 암시하는 것처럼 아동보호체계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의 끔찍한 사망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촘촘하게 범정부 차원에서 아동정책 전반을 살피고, 장기적으로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합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아동복지학회가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을 묵묵히 뒷받침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온전한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합계출산율이 0.84명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치라 많은 분들이 저출산을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낳은 아이 한 명이라도 잘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끔찍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시안적 대책 발표에 급급하고, 그 결과 현장은 개선되지 않은 채 또 사건이 반복되는 양상이 십수년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독한 악순환을 끊어내고 사후 수습이 아닌 학대 예방의 시각으로 입법과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시는 의견 잘 새겨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전한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오늘 토론회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아동복지학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한국 아동복지학회 30주년 기념 춘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 간 아동의 복지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한 연구를 통해 아동복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을 주신 한국아동복지학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온전한 아동보호 체계의 구축’을 주제로 개최하여, 일선 현장에 밀착된 논의에 집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아동의 안전한 보호에 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9년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20여 년 간 민간에서 담당해온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에서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전국 229개 시군구에 올해 말까지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요원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변화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장 대응 인력의 협업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높여 초기 대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대책의 주요 방향입니다.

또한, 학대 발생 초기,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3월 30일부터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후에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일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지난 1월, 민법 상 징계권이 삭제된 것을 계기로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전 사회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 지원을 연계하여 아동학대의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와 회복 지원 등을 더욱 세심히 챙기면서, 우리 아이들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학계와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시각에 기반한 풍부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동 학대 대응을 비롯한 아동보호체계의 현장 안착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도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다양한 논의들을 귀 기울여 듣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아동보호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오승환입니다.

2021년 한국아동복지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전임 학회장으로서 학회 발전에 수고해주신 전임 선배 학회장님들과 선배 교수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아동복지가 맨 처음 시작된 것처럼 학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학회를 제외하고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학술지 평가에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가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학회원 여러분께서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동복지 영역의 연구를 진행해주셔서 많은 회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 영역에서 큰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국가 책임제가 강화되고 입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회원 여러분께서 더 좋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국의 100만 사회복지사가 아동복지학회 발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안녕하십니까?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윤혜미입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 3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를 맞이하여 정선욱 학회장님과 학회 임원분들, 모든 학회원들께 축하말씀 드립니다. 저도 2011년 한국아동복지학회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학회장으로 치렀던 기억이 있어 30주년에 대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회 때는 학회가 드디어 성년이 되었다고 기뻐했는데 그 동안 훌륭하신 학회장님들의 리더십에 힘입어 이제 학문에 일가견을 이룬다는 而立의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는 창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계는 물론 현장을 존중하여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주제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안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는 연구자와 실천가들이 30년간 쌓아올려 이룩해 이룬 아동복지의 철학과 전문성을 공간을 뛰어넘어 공유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아동권리 보장원도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아동보호체계의 진입, 개입,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각지대를 줄이고 목표와 절차 모두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의 구축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신다 들었습니다. 지난 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반영하여 아동보호체계가 개편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아직 제도 안착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한국아동복지학회 30주년 기념학술대회의 결과물이 해법을 제시하고 아동권리가 살아있는 정책과 현장을 선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과 발달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도 미래세대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불혹과 하늘의 명을 알게 된다는 지천명의 40주년, 50주년을 향해 단단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와 아동복지 발전을 설계하는 한국아동복지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아동권리보장원도 우리 아이들의 최선을 위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05월 28일

축 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준입니다.

5월 아동의 달을 보내며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울러, 한국아동복지학회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지난 30년은 또한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복지학회가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함께 일해 온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각종 아동관련 현안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저희와 같은 아동 관련 단체들에게도 훌륭한 길라잡이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 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 아동학대와 같은 아동 관련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복지학회나 저희 아동단체협의회가 아동의 보호를 통해 소중한 아동 권리와 존엄성을 지켜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가 마련한 논의의 장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오늘의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우리 모두의 목적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늘 아동복지를 위한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정선욱 학회장님과 역대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님,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동단체협의회도 아동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아동 관점의 정책 개발과 정책 모니터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학회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입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아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노력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으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아동의 생명을 지켜내고 온전하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 시스템의 실질적인 작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학계의 꾸준한 노력과 긴밀한 협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아동보호서비스 실천현장의 실무자와 아동보호체계 연구자, 정책입안자와 법률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관련법의 안전망 강화방안과 지역사회 아동보호영역의 보다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오늘의 자리가 더욱 뜻 깊게 여겨집니다.

지자체 아동보호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실무자의 주제발표를 통해 아동이 보호체계에 진입하는 단계에서의 쟁점과, 보호체계 내에서 개입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의 쟁점,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의 쟁점을 세밀히 살피는 1부의 기획주제 토론과, 국회와 보건복지부, 법무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에의 반영 방안을 고민하는 2부의 종합토론 시간을 통해 '온전한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짜여있어 좋은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동옹호대표기관을 자임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지역본부와 아동옹호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전국 51개 사업기관을 통해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여러 활동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또한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긴밀한 협력의 주체로서,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축 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김웅철입니다.

2021년 한국아동복지학회 3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있는 토론회를 열어주신 정선욱 회장님과 아동복지학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좌장을 맡으신 김진석 교수님과 토론자로 참여해주시는 강선우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발표와 토론에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간 아동복지학회는 연구의 학술적 교류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아동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아동복지 현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늘 현장과 소통하며 아동복지정책 및 연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굿네이버스도 아동복지학회와 같이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30년간 같은 시간 속에서 대한민국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고 생각하니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생각됩니다.

우리 굿네이버스는 1996년 국내 최초로 숨겨진 아동학대에 개입하였고 당시에는 생소하였던 아동학대의 개념과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아동복지체계를 확립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굿네이버스는 한국아동복지학회 및 여러 단체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온전한 아동 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지구 환경의 시계는 더욱 빨라지고 새로운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은 아이들에게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동을 둘러싼 다각적인 환경을 점검하고 아동복지학회와 협력하여 아동의 복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아동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열리는 대토론회가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아동보호체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의 넓고 깊은 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아동이 온전한 보호체계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유니세프 아동의회 2기에서 활동중이며
신평중학교 3학년 재학중에있는 정연우입니다.

축사진행에 앞서,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체계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또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주셨다는 점에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학술대회 참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동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노력해온 한국아동복지학회의 3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생각합니다. 학회의 30주년을 축하드리며, 과거 1991년부터의 30년간의 활동만큼이나 앞으로 30년 또 그 이상의 미래가 언제나 아동들을 위한 길이길 한명의 아동으로서 바라겠습니다.

저는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가 양천구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접했습니다. 이 정인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아동의 죽음 전에 세 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피해당사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언할 수 없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아동학대의 철저한 조사는 커녕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부모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는데요. 같은 아동의 입장에서,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이를 알아줬어야 할 어른들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정인양이 겪었을 공포가 마치 제게도 전달되는 듯 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들을 막기위해 구축된 우리의 아동보호체계의 실행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축사를 준비하며 아동당사자로서 아동보호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는데요. 아동보호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아동학대 정황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어른들의 꾸준한 '관심'과 이를 실행하면서 공공 및 민간 아동보호관계자들간의 유기적 연결과 '협력'을 통해 현 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할것이라 생각되어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점들 또한 다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동학대로 고통받았으며 국가아동보호체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부디 아동들을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저희 아동의 눈에 비춰지는 세상을 어른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하여 소외되거나 고통받는 아동들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또는 도와주세요) 저는 한국아동복지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논의하는 과정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저희아동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으로 함께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나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모든 아동들의 입가에 웃음이 걸린 세상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이번 학술대회에서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깊은 논의를 통해 현재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해결과 극복이 가능하길, 또 다시는 이와같이 우리 아동들이 눈물흘릴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초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아동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아동참여의 장이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시는 글
축사

1부 기획주제

좌장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제1주제 아동보호체계 진입 단계의 쟁점 _ 1

발 표	김지선(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장)	3
토 론	김경희(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	13
	김민정(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17

제2주제 아동보호체계 개입 단계의 쟁점 _ 21

발 표	조현희(안산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	23
토 론	정정호(청운대학교 교수)	35
	김미선(은평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담요원)	39

제3주제 아동보호체계 사후관리 단계의 쟁점 _ 43

발 표	임윤령(전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45
토 론	정선영(인천대학교 교수)	61
	김연희(동명아동복지센터 사무국장)	63
	김선숙(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68

2부 종합토론

좌장 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

토론	1부 발표자와 그리고	
	강선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3
	김병익(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78
	김영주(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88
	박은정(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91
	정선희(법무부 아동인권특별추진단, 검사)	92

후원기관 소개

후원기관	아동권리보장원	99
	굿네이버스	100
	삼성복지재단	101
	세이브더칠드런	102
	아산사회복지재단	103
	초록우산어린이재단	105
	한국수력원자력(주)	107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1부 기획주제

좌장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제1주제 아동보호체계 진입 단계의 쟁점

발 표 김지선(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장)
토 론 김경희(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
김민정(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보호체계 진입 단계의 쟁점

김 지 선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장)



01 아동학대 정책의 변화



02 아동학대 발견 강화



03 체계적인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필요성



- '인터넷' 어린이집 교육 유료층-보험가입시 발급
- 복지부 인증기관 교육도 온라인 영상 시청도 인정
- 학대예방 교육 "아무나 가능?"
- 복지부 지침상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 교육은 필수 내용인 포함된다면 누가 교육해도 무방

복지부 개선방안(2021.3)

- 복지부 제작 콘텐츠만 인정 (민간 콘텐츠 불허)
- 강사 자격 요건 (필수 기준)
- 교육방법 별 증빙자료 요건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분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통합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중앙교육인수원, 나라배움터 등에서 이수

04 조기 발견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사업



사업개요

-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 18세 미만 아동 대상, 분기별 시행
- 4차수의 경우 만3세 아동소재 인건 전수조사로 대체
- 수행주체 읍 면 동 담당 및 맞춤형복지담당자 협업

현재 상황

- 2019년 97,856명 대상(89,689명 조사 91.7%) 연계사례 2,268명, 학대신고 52명(0.06%)
- 전국 아동학대발견율 0.38%에 훨씬 못 미침
- 코로나로 인해 대면조사의 어려움 급증 (예: 2020.6월 경남 창녕 아동학대사건)

개선방안

- 학대피해아동 선제적 발견에 부합하는 예측시스템 구축
- 학대 의심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
- 수사기관과 연계 강화 (가정폭력 변수추가에도 협력 안함)

0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당신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이십니까?



- 의료인 직군, 교사직군(보육교사, 학원강사포함),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 2021년 추가된 신고의무자 '약사, 간호조무사
- 최근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시 해당학교 명의로 하고, 학교전화를 사용하도록 함 (서울시교육청 2021.1)
- 4만 8천개 편의점이 학대아동 지킴이 역할을 하기로 함

신고의무자 현주소

- 부실하고 형식적인 신고의무자 교육
- 신분노출로 인한 직장 내 관계 문제, 불이익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상황임
-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 방안 마련
- 전 국민이 신고의무자라는 인식이 필요

06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2020.10)

공개 바꿈니대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아동들
지원체가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아동학대, 방임의 위험 등에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안정조치, 보호처치 수위,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가정위탁, 시설 입소 등의 보호 조치 결정,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 및 결정하며 공학대 발생 등 방지

☞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



개편 배경

- 보호아동에 대한 지자체 역할이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인력부족으로 현실에서 미 작동 (196명당 평균 1.2명/2019.4)
- 민간위주 보호 지속, 보호조치변경 및 원가정복귀절차 부재
- 아동보호전담요원 218명 시·군·구(176개 배치)(2020. 10)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개편

- 18세 미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의거 운영
- 상담 및 가정조사 → 개별보호 관리계획수립 → 아동복지심의위 안전상정 → 보호조치(원가정지원, 양육상황점검, 보호기관 모니터링 등) → 보호조치종결 → 아동복지심의위 안전상정 → 사후관리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과제

- 부족한 인력,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의 문제
- 신분의 안정화 문제 (시간선택제 또는 공무원)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이보전, 보호시설, 드림스타트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 문제

06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편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21.4.26 복지부

아동복지법
개정(6.30예정)

시행계획 수립, 보호, 퇴소
친권제한, 상실신고
대상아동 선정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역할

시행계획 수립 등
아동정책 전반 심의

아동복지심의위원
산하 소위원회

보호, 퇴소, 친권
제한 등 역할

사례결정위원회
신규설치

심의위원 중 전문가로
소위원회 구성

구 성 및
운 영 방 식

과장급 공무원 및
보호관련 실무경험자
아동이력 중대사안
사전 대면심사

긴급사안은 참석 범위 조절 개최

논의지점



-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 20. 10월 이후 아보전 사례전문위 폐지 -> 아동복지심의위 및 소위원회로 전환 -> 21. 4. 사례결정위원회의 신규설치 혼선
- 시, 도와 시, 군, 구 간 역할 분담 문제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07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현재 상황

열악한 전담공무원 근무환경

- 2인1조 현장방문 원칙, 24시간 당직근무로 피로도 증가
- 업무 공백 발생 (교육, 연가 등) / 원거리 거주자 채택당직 불가
- 수당, 대체휴무 등의 지원부재
- **늘어난 현장출동, 경찰의 현장동행요청 급증**

단시간 공공화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 전문성 부족

- 현재 2-5인 순차적 배치 : **인력수급 비상**
- 선배치 후 교육체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 격무, 위험업무 기피로 신규직원 배치 자치구도 많음
- 최초 신고 50건당 1명 배치 - **현재 80건 이상 담당**

조사 이외 업무 할당량이 너무 많음

- 사회적 관심 증가로 현행, 통계 등 자료요청이 많음
- 아동학대예방 교육(신고의무자), 홍보, 자원봉사자 관리



07 아동학대 조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언

아동학대 조사

- ◆ 조사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10년 차 이상의 사회적 배치 또는 교육후 배치)
- ◆ 3년 이상의 근무보장 (보직 순환 유보)
- ◆ **격무부서 지정, 인센티브 부여**
- ◆ 정기적인 실무 슈퍼비전, **조사팀장(6급) 교육과정 편성**

- ◆ **적정인력 총원** (2인 1조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
- ◆ 야간 및 휴일에 대한 신고 접수는 **권역 별 대응센터 대응 후 익일 지자체 통보** 방식 고려
- ◆ 즉각 분리 조치에 따른 문제점 보완

- ◆ 조사 공무원 **신변보호** 및 가해자 민원으로부터 **면책권 부여**
- ◆ 개인정보 보호 등을 넘어선 **조사 협조가 가능하도록 조치**(학교, 병원 등)
- ◆ 조사나 사례관리 **거부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

0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2021. 1. 20, 복지부)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심으로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교육 내실화** - 신규 80시간→ 160시간, 경력자 매년 40시간
- 기존 학대조사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 강화**
- 평가 척도 매뉴얼 개선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직위 지정(3년), 인센티브 수여(평정, 수당)**
- 장기 재직 전문 경력관으로 선발 임용하는 방안 활용
- 경찰- 일선 현장인력 교육 강화 /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 정립 및 협업 강화
- **현장 조사거부 시 과태료 부과**
- **면책규정:**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대응지침과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경우 민.형사상 책임지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
- 업무방해죄 적용/ **악성 민원인 대응 요령 교육 실시/심리상담지원(소진예방)**

08 학대피해 아동 즉각 분리(2021. 3.30)



- 응급조치 종료 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험사례
- 새 학대 우려(2회 이상 신고) 또는 면밀한 조사 필요시
- 판단 주체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응급조치의 경우 공무원과 경찰 동시 주체)
- 현장 사례판단 척도 없음 / 기간: 보호조치 결정시까지
- 피해(의심)보호자에게 대면 또는 유선 고지후 서면 통보

즉각 분리시행의 현재 상황

- 즉각 분리 해당 시안 판단의 어려움/ 의심사례이나 청소년인 경우 쉽게 동의하지 않음
- 사례판단 척도의 적절성 문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음
- 즉각 분리 조치에 따른 입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임
- 장애아동, 영유아 전용 쉼터가 거의 없음 (가출청소년쉼터의 경우 해당 시설도 보기 어려움)
- 가해자에 의한 민원 및 소송 등 우려

09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민.관.경 협업 문제

쟁점

아동복지법 제 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아동학대처벌법 제 11조 (현장출동)

“아동학대 조사의 권한과 책임 주체를 누구에게?”

평일
주야,휴일
역할분담



조사공무원

순차적 배치에 따른 인력부족
2인 1조 교대근무 인력 부족

경찰관

신고접수 후 공무원 동행 문제
13세 전후로 시경과 일선 경찰구분
수사경찰과 APO 역할분담 문제

아동보호전문기관

2020.10 ~2023. 9 차차구 조사
집중지원 또는 적극지원

09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구성·운영(2021. 3)

구성 개요

- ◆ 구성: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과장(주관),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 운영: 월 1회 개최
- ◆ 목적: 학대피해, 위기의심 아동 정보공유, 보호·지원 협력 방안 모색

주요 협의사항

-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학대피해 아동 보호 (각 기관 간 정보공유, 안전점검)
-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 위기의심 아동보호 (분기조사에 대한 월별 추진 상황점검)
- ◆ 만3세 아동 전수조사 아동관리
- ◆ 학교 현장의 학대피해, 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관찰, 상담 결과 공유
- ◆ 아동학대 24시간 대응을 위한 지자체-경찰-아보전 협업 필요 사항

09 아동학대 공동업무수행지침(안)

- 신고접수: 아동학대 신고 112, 아동학대 상담은 129 (상호동보)
- 현장출동: 동행 요청시 동행출동을 원칙으로 함 (단, 야간과 휴일은 경찰에서 현장확인 후 동행 요청하되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
- 현장조사 및 조치: 응급조치 및 즉각 분리 필요시 협의하되 전담공무원이 최종 판단 (경찰은 응급 조치 후 인자수사 착수 전담공무원은 즉각 분리 후 추가 조사 및 검사 후 수사 의뢰)
- 피해아동은 신속하게 의료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 등으로 인도
- 통합사례회의: 판단이 어려울 시 의료인 등 전문가 자문체계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 (전문기가 참여하는 회의)
- 정보공유: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중심으로 전담공무원과 경찰간 정보 공유 (정보공유 범위를 설정할 것)
- 즉각 분리: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추가 조사 및 피해(의심) 아동 건강검진 등을 통해 사례 판단하고, 조사 및 사례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보호 조치 결정



09 서울시-서울경찰청, 발견~보호 전 과정 공동대처MOU

아동학대 대응 강화대책(2021. 5.12, 서울시)

- 강화대책 3대 분야 14개 추진과제

추진체계 강화

-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운영
- ◇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 ◇ 경찰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대응

- ◇ 아동학대 신고체계 개선/ 전담공무원, 경찰 신속한 활동조사
- ◇ 격관적인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구축/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 ◇ 가족기능 회복 지원/ 사례관리 철저로 재발 방지

예방

- ◇ 예비부모와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강화
- ◇ 시민 참여 형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전개
- ◇ 복지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 정례화
- ◇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09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세부 내용

- 야간,주말,응급상황 24시간 이용
- 보호기관 입소 건강검진
- 상담 및 진단서 발급

전담의료기관지정
(8개 상급종합병원)

- 아동학대 판단회의
- 의사, 변호사, 임상 심리사 등
전문가 참여

아동학대 판단
시스템 도입

경찰

- 아동학대 전담체계 구축
- 사경 특별수사팀 신설(19명)
-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담
- 각 서에 **여성강력팀 신설 99명**
- APO 중원

아동학대예방
센터로 기능확대

- 기존 아동복지센터의 기능확대
- 교육 및 업무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
- 거점형 심리치료 역할

전담인력 및 보호
시설 확충

- 전담공무원 확충(79명 →)191명)
- 전용차량 지원, 수당 현실화
- 아동보호시설 확충(2023. 12개소)

10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의 현재 수준



- 현장 조사 이후 국가아동학대시스템을 통한 **사례 이관이 원활하지 않아** 오기입 누락 등의 오류 발생
-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분리로 정보입력, 공유방식을 고려한 개편이 필요함 (**접근 단계별 공유 방안 마련**)
- **현장에서의 접근성 강화**, 기록 절차 단순화
- 느린 **속도 개선**,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개편** 및 통계추출 기능, 주기적인 조사 현황 등 자료 추가 기능 필요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2016)

어른들은 공모자였다

“아동학대 징후,
몸의 구조선호 봤다면 신고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1~2주에 한번 꼴로 발생한다
세월호 참사가 국가의 방임으로 커졌듯
아동학대 사망도 사회의 방임이 조장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뒤늦은 기록
(한겨레신문 탐사보도팀, 2019)]



아동보호체계 진입 단계의 쟁점 토론문

김 경 희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

한국아동복지학회에서 ‘안전한 아동보호체계구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러 정책 및 현장 전문가들과의 소통의 장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공공 아동보호체계 전환과 실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지선 과장님의 발표 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 어려움과 개선 과제에 대해 생생하게 느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동보호체계 진입단계의 쟁점들을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고찰해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기된 여러 쟁점 중에서 공공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어떤 점을 더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 공공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1. 원가정보호와 분리보호 사이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고 있는가?

진입단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주요 역할은 아동학대 발견과 조사, 조치결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여부의 판단 뿐 아니라, 판단과 조치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가치와 실천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국제사회 기준에 따른 보편적 아동보호의 원칙 중의 하나는 ‘원가정 우선 보호의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것이 아동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유일한 선택지로 생각될 수 있어, 아동학대 상황에서 원가정 보호의 원칙은 실현될 수 없는 이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정 보호의 원칙은 학대피해 아동에게 무조건 원가정을 고수해야 한다거나 원가정에 방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동 지지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확보해나가는 노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또는 방임으로 인해 아동을 집에서 퇴거시켜야 하는 경우, 아동에게 가장 변화가 적고, 가족과 같은 환경으로, 아동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연방법률을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가정 보호, 친족 보호, 위탁 가정, 소규모 그룹홈 순서로 우선순위를 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호시설에서 학대 아동의 입소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

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2018년 4538명, 2019년 4612명, 2020년 505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발생 원인으로는 '학대'가 1766건(42.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가가 점점 더 많은 학대피해 아동들을 발견하여 보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시설보호조치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 가령 원가정보호, 친족보호, 위탁가정 보호 등의 우선적 고려와 배치가 이루어져 왔는가를 검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이 일시보호시설을 포함하여 그룹홈, 아동학대쉼터, 양육시설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잘 적응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배치 결정 및 연계 과정에서 공공 주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주체가 원가정 보호 유지 혹은 대안 가정으로의 배치를 결정할 때부터, 가족기능 강화와 가정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위한 국가적 개입과 노력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아동을 시설에 보호할 때는 기관에서 아동을 받아줄 수 있는가를 먼저 검토하기 보다는, 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동의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먼저 고려하여 대안보호체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아동을 받아줄 수 있는 쉼터나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철학과 원칙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환경의 형태와 구성을 고려한 후, 그런 공간과 기능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도입한 즉각분리제도의 경우에도 아동중심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 후 아동에게 트라우마를 주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학대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가, 아동 조사와 동시에 원가정에 대한 조사와 욕구 파악이 이루어져 진술의 일치성 확인을 통한 혐의 입증 가능성이 가능한가, 원가정은 아동 안전이 확보되고 모니터링 될 수 있는 공간인가, 무혐의 판단 후 가정에 복귀할 경우 원만한 재결합과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책과 모니터링 체계가 고려되어 있는가, 혐의가 입증되어 아동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면한 큰 변화 속에서 아동이 주체성을 갖고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아동에게 안내하고 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 등에 대한 과정과 절차가 보다 아동 중심 관점에서 보다 정교하게 고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진입단계부터 공공의 총체적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는가?

공공보호체계가 시작되는 아동학대 진입단계 국면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조사와 판단 업무 수행 뿐 아니라 아동중심 아동권리실현의 책임자로서 좀 더 포괄적인 역할을 요구받게

됩니다. 즉, 공공보호체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단기적으로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되, 중장기적으로 아동의 지지체계 형성과 돌봄의 연속선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절하게 연계하고 협력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현재 조사단계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사례 판단과 개입 과정에서 시각 차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강력범죄를 주로 다루는 경찰에서는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하는 것에 더 보수적일 수 있고, 아동복지적 관점을 가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부모를 사례관리의 의무대상자로 끌어내기 위하여 아동학대 처벌법 적용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움직이는 여러 개입 주체들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안을 공통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보호체계를 중심으로 소통과 연계 방안들이 더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단되는 시점 이후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진입체계에서 걸려져 의뢰된 사례에 대해서만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개입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향후 심층사례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전문적으로 갖추는 것 뿐 아니라, 공적 전달체계 안에서의 의뢰와 연계, 소통 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필요조건이 될 것입니다. 즉,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조사와 판단, 조치 과정에서, 어떤 사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가가 향후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것입니다.

거부적인 사례일수록 아동학대 조사와 조치까지의 절차가 더 오래 걸리고, 초기 개입 시기가 지연될수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 대응 절차에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등적 대응체계 혹은 이중트랙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위험 사례에 대해 조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의뢰하여, 전통적인 스크리닝과 조사업무 대신 가족지원을 위한 욕구 사정을 실시하고, 학대 가정에 대한 적극적 혹은 적대적인 조치 보다는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두는 방식입니다. 비조사 트랙 진입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와 판정 절차를 없애 담당자가 가족 간의 적대적인 측면을 감소시킬 수 있고, 조기 지원이 가능하며, 조사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고위험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입의 장단점과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후 이를 공공화 체계 안에 접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따른 상담·치료위탁 외에도, 복지적 측면에서 위기 가정에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공공보호체계에서는 진입단계에 해당되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이후 개입 및 사후관리의 전 과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역할 조율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3. 인력과 예산, 교육과 슈퍼비전 체계가 확충되고 있는가?

아동보호체계가 아동중심 관점에서 잘 작동하려면, 발표자가 지적한 대로, 아동보호체계의 제반 구조와 환경이 먼저 안정화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의 확충, 교육과 슈퍼비전의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수급 확대, 열악한 전담공무원의 근무상황 개선, 전문성을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 강화 방안들이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시설보호아동에 대해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분 안정과 전문성 확보, 명확한 역할 규정의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보호의 국가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아동보호체계에서 많은 변화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당면한 현장 과제를 해결하고, 체계의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끊임 없는 성찰과 논의 또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아동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동보호체계 진입 단계의 쟁점 토론문

김민정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2020. 10.0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시군구에 배치되면서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0.10월 이후, 새로운 아동보호체계가 기능하게 되면서, 8개월 간 아동보호체계 진입 단계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1. 높은 아동학대 인식을 기반으로 한 아동보호체계 관련 기관의 소통과 협력 필요

아동학대 신고가 112 또는 시군구로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가 발생한 현장에서 아동학대 발생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후 아동과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재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아동보호전문요원이 학대피해아동이 보호 될 쉼터를 확보하여, 쉼터에서 아동이 보호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위자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된다면, 만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사건은 지방경찰청, 그 이상 연령의 아동에 대한 사건은 지역경찰서에서 수사 진행하고, 검찰과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 및 기소됩니다.

위처럼 하나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요원, 경찰의 일선지구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경찰관, 수사팀의 수사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검찰청과 법원,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보호체계 내 다양한 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아동보호체계 관련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다양한 아동보호체계 내 기관들의 상이한 아동학대 인식으로 인해 아동학대판단과 조치 결정, 이후 사례관리 시에 있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양한 아동보호체계 내 기관 중 단 하나의 기관에서, 또 한명의 담당자가 낮은 아동학대 인식을 갖게 된다면, 예를 들어 부부싸움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인식, 신체 손상을 남기지 않

는 가벼운 처벌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인식, 아동이 문제행동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의 학대는 용인될 수 있다는 인식 등을 가지고 있다면 아동복지법 상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명백한 아동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거나,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초기 아동학대보호체계에 있는 기관과 담당자들의 낮은 아동학대 인식으로 학대피해아동이 아동학대 보호체계 내로 진입 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학대행위자는 경미한 아동학대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케되고, 학대행위자의 학대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여 아동학대 재발과 더불어 더 심각한 아동학대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체계 내 다양한 기관들 모두가 높은 아동학대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하여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기능하며 협력해야만 학대피해아동이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보호 받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아동보호체계의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총원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2020.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시군구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조치결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산시의 경우에도 2021년 1월~3월까지 520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8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였고, 3개월 간 1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65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무원 1명 당 연간 50건의 사례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준점을 삼아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안산시의 경우에는 1분기에만 공무원 1명이 65건을 담당하였기에 연간으로 산출하면 복지부 기준점의 약 5배에 달하는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 현장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아동학대 조사 기간이 길어져,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부족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로 인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 및 당직 등의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 사례관리에 집중해야 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현장조사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례관리 업무 부실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많은 업무량 외에도 학대행위자의 민원과 주말 및 야간 출동 등으로 인한 격무로 이미 기피 직무가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_ 참여인원 5,454명¹⁾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배치된 만큼 저희 역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아동학대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3년 정도 해당 공무원이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누가 일을 할까요? 저의 11월 초과근로시간은 95시간입니다. 이중 제게 지급되는 수당은 57시간이겠네요. 하루에 4시간씩만 인정되니까요. 올 1월에 결혼하고 전 신혼생활도 못보내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큼니다. 학대피해아동들만 만나다 보니 심리적 스트레스와 감정적 소진이 너무 커서 떠나고만 싶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세웠지만 다른 지역은 업무용 휴대폰이 없어서 자비로 휴대폰을 개통한 곳도 많습니다. 차가 없어 택시를 타고 다니고, 아이를 맡길 쉼터가 없어 전국 쉼터에 구걸하듯이 전화를 하면서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전화하고 새벽에 아동을 보호해주고 옵니다. 야간에는 출장비도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2달이 지옥같습니다. 아이를 지킨다는 보람도 있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드니 그 보람이 사라지네요.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대피해아동을 가장 최초로 발견하고 보호하는 역할, 학대피해아동을 아동보호체계 내로 진입시킬 수 있는 KEY를 가지고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학대피해아동이 아동보호체계 내로 진입하여 학대 후유증을 치료하고,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정인력 충원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연2회 이상 학대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들에 대해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가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나, 아동보호현장에서는 매일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분리보호가 필요하지만 보호될 수 있는 쉼터가 없어 원가정 보호되거나 안전여부 확인되지 않은 친인척 가정에서 보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학대피해아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벗어나 가장 안전한 울타리인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보호 받으며, 학대 후유증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나,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1) 국민청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2020.12.02

부족으로 인해 가장 안전한 아동보호체계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어려운 점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업무 매뉴얼²⁾에 따르면 아동학대사건 법적처분 종료 전에는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정복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처분 종료의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학대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시설에서는 신규분리보호 아동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아동을 전원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원가정복귀를 목표로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학대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3개월 내 다른 시설로 전원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된 학대피해아동은 행위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생활공간 및 주양육자의 변화로 인해 불안해하며, 여러 적응문제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다른 시설로의 전원은 더 큰 불안을 야기하며, 학대후유증을 충분하게 치료하고 회복해야 할 학대피해아동이 쉼터 적응에 더 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대로 고통받은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보호체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확충해야 합니다.

아동보호체계의 인프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예산입니다. 학대로 고통받은 아동들이 보호 받을 쉼터가 없어 다시금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학대피해 속에서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즉각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아동보호체계 인프라를 확충해야할 것입니다.

2)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대응업무매뉴얼, 2020.08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1부 기획주제

좌장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제2주제 아동보호체계 개입 단계의 쟁점

발 표 조현희(안산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

토 론 정정호(청운대학교 교수)

김미선(은평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장에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 개입 단계의 내용과 쟁점

조 현 희 (안산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

아동보호체계 개입단계의 쟁점

안산신나는그룹홈 조현희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장에서 바라 본 아동보호체계 개입단계의 내용과 쟁점

I. 아동보호체계의 중심 가치

-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꼭 필요한 전사업을 만날 수 있게 작동되어야 할 보호 체계
- 아이들이 보호체계 안에서 긍정적인 경험하면 추후 양육 환경에 영향 미칠 수 있을 것

보호체계 안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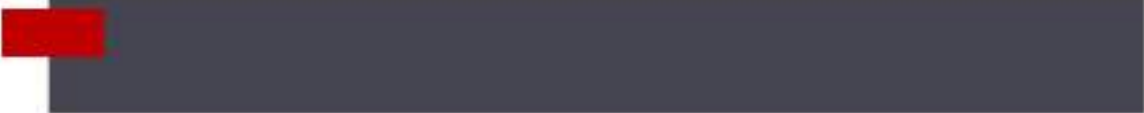
아동이 보호 체계로 진입한다는 것은
생명을 보호받고, 말살 당한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이들 입장에선 자신을 숨쉬게 하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할 한 사람을 절박하게 찾고 있는 것이다.

주양육자를 만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 나를 배불리 먹여 따뜻이 자워줄 사람
- 위험할 때 지켜주고 내편이 되어줄 사람
- 나를 알아봐주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
-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세상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낀다.
- 도벽을 통해 욕구불만 상태를 표현,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중독적 상태에 빠짐
- 자학, 자해, 죽음에 압도되는 우울감을 느낌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존재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어야



아동보호체계는 무엇으로 작동되어야 할까?

아동보호체계의 모든 과정은 이러한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삶이 건강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초점 맞춰 작동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살리고 옹호하려는 사명감이 필요한 곳, 아이들이 정말 많이 힘들게 할 때도 아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필 힘을 가지는 것이 우리 현장에 꼭 필요한 가치이자 선명이다.



일시적인 아동보호에서 치료와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고 기대해야 할 지 함께 길을 찾는 곳
- 필요가 충족되고, 자신을 안전하게 드러낸 경험을 통해 심터를 떠나서도 잘 살아갈 힘을 길러가도록 돕는 곳
- 전장터에서의 응급처치 역할 → 정확한 진단과 초기대응이 필요한 곳
- 현장조사에서의 판단을 다시 살펴볼 여유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와 시너지를 만들기도 함

분리라는 위기를 통해 보호자와 아동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새롭게 만나는 기회를 만들

보호기간을 따지는 것보다, 한 아동을 위한 개입목표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환경 필요

II.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바라본 개입단계의 내용과 쟁점

- 보호아동 정원관리보다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가 관심사가 되어야
- 사례기관간 협력으로 가족회복의 통합 사례관리로 나아가야

"지금 입소 가능한가요?"

보호아동 정원관리보다

아이들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관심 두어야

입소

이루어야 할 과업

-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고 느끼며 자신의 욕구를 편안하고 적절히 표현
- 신고로 인한 사건처리, 분리보호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져야 할 상황이 아니며 책임져 줄 어른들이 있다는 걸 믿음
- 기존의 삶이 단절되거나 부정당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느끼고 기대

■ 개입 내용

- 낯선 공간과 사람들에 대한 불안 이해 → 완화
 - 밝고 따뜻하며 안정적인 쉼터 환경 유지
 - 수용적이지만 적절한 경계 유지
→ 아동 스스로 나아갈 방향과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 형성
 - 아동이 쉼터가 안전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거라는 본능적인 안도감으로 적응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수일 ~ 2주 정도의 시간 걸림
- | | |
|---------------------------|--------------------------------|
| ◇ 입소 오리엔테이션 | ◇ 건강검진 |
| ◇ 필요물품 구입 | ◇ 심리검사 및 초기면접 |
| ◇ 학교 및 어린이집 조치 계획 확인 및 처리 | ◇ 보호계획수립 (원가정에 대한 사정, 자원체계 파악) |

협력과 쟁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의뢰 과정에서 초기대응 관련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공식적 구조의 필요성

쉼터 내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시기 및 보호자
개입 계획의 신속한 진행 필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입방향에 대한 협의 정도에 따라 사례관리의 질이
달라짐 것

분리보호 이후 초기대응에 대한 협력, 조정 주체 필요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개입 방향을 정리, 분석하여 조정할
주체가 필요함

*언제 집에 갈 수 있나요?

사례관리기관 간 협력으로
가족 회복의 통합사례관리로 나아가야

■ 심터의 사례관리

■ 이루어야 할 과업

내면의 힘 기르기

이유없이 맞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
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 억눌리고
비뚤어진 자기를 알아가고 표현하며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해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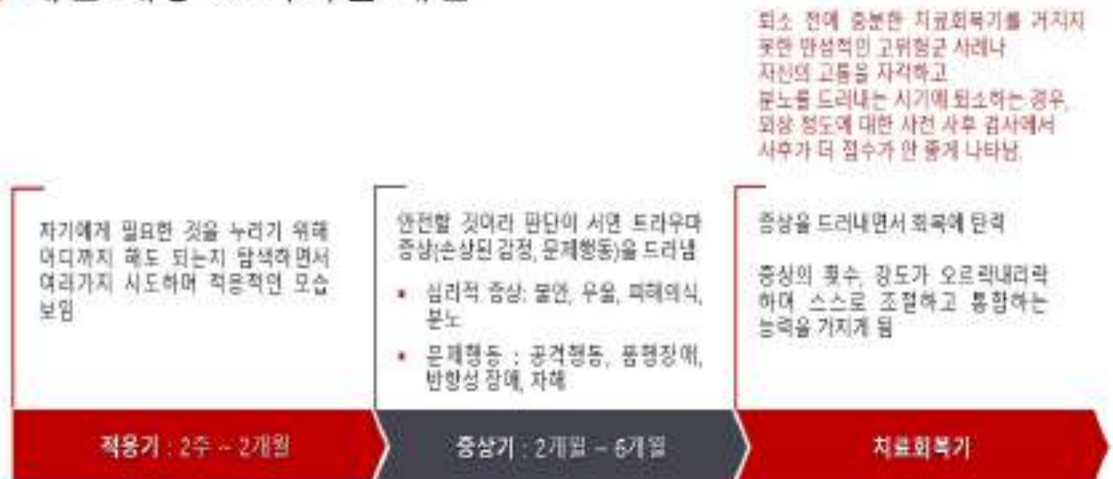
자신과 가족과 화해하기

위로가 되는 좋은 관계,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견디기 어려운 관계를 돌아보고 해석하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적인 안정감을 확보해 가야 함.

■ 개입 내용 1. 주 진행 내용

- **보호**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생활지원** : 피해아동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의복 등 생필품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병원 치료(이동)
- **교육 및 정서지원** : 문화체험활동, 놀이프로그램, 학업지도, 안전교육, 체육활동 등

■ 개입 내용 2. 시기별 개입



3. 개입 과정에서 주요 초점으로 다루는 심리정서적 발달과업

<p>안정감</p>	<p>자존감</p>	<p>효능감 자신감</p>	<p>사회성</p>	<p>환상과 현실 통합하기</p>
<p>불안을 다루어 안전감 느끼기</p>	<p>트라우마 다루어 자신의 감정 알아채고 적절히 표현하기</p>	<p>특기 특성 활동을 통해 감점 찾기</p>	<p>센터 내 관계에서의 위로와 적응, 신뢰를 표현하고 느끼기</p>	<p>가족과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정서 알아가기</p>

4. 학대유형별 개입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와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에 띄게 다르고 왜소 • 심하게 맞은 상처 • 보호자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함 → 관계회복은 원하지만 가정보로 들어가기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는 편임. ◆ 정성동인 좋은 음식 제공,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구입하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해 1차적인 욕구가 충족되며 발달 촉진되고, 심리정서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깊은 우울과 무기력 • 만성적 수준의 진폭 성폭행을 당한 경우, 우울과 억압된 분노를 가짐. 치료 개입할수록 심각한 분노를 느끼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구분없는 공격적 모습, 수년간 정서적 고통 호소 • 가족이 문제를 은연히 덮으려하거나, 비가해보호자가 마중동호적 입장을 취하지 않을 때 심각한 정신적 혼란, 정신증이 촉발되기도 함. ◆ 법적문제(가족문제) 지원 ◆ 소아정신과 연계치료 ◆ 심리상담 지원 ◆ 장기거취 마련 (성폭력쉼터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 정서와 문제 행동 • 부정적인 감정이 압도하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등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어 답답한 다음을 문제 행동으로 표출함. • 생활이 안정되면서 퇴행과 폭발적인 감정 표현, 도벽, 공격성과 자해 등의 외현 행동을 함. • 이를 조절하여 안정적인 정서 행동을 하기까지 최소 1-2년의 지속적 개입 필요 ◆ 심리치료(주로 놀이치료) ◆ 반복적 훈육, 생활지도 ◆ 소아정신과 연계 (중증조절 등을 위한 약물치료)

협력과 쟁점

학대피해아동 심리 내 보육사·치료사간 협력(사례회의)

심리의 특수성에 맞는 심리치료사업 협력되어야 함.
역할과 기능에 맞는 인력 배치 위한 지원 및 정량 필요

협력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

아동에 대한 개입과 보호자에 대한 개입 내용 공유, 협력
- 중대 중상에 대한 의료지원
- 심각한 병행장애로 인한 학교부적응 상황, 병의 연속 상황
- 원가정 복귀안배 관련 : 재입원프로그램, 입시유가
-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법적 절차

가족회복의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관정, 임상 단위 참여-사례관리 방향 설정 가능한 사례회의 진행
아동과 보호자를 심리치료 하는 치료사 간 협의도 필요
보호자에게 아동의 상황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설득이 필요
가족재결합 과정에서 가족유망성도와 연담 강화.

협력의 지자체 협력

아동보호전문요원과 입·퇴소 관련 논의 → 입·퇴소 여부에 따른 기능적 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협력적 환경조건이 우선 해결될 필요,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함

"어디로 가야 안전한가요?"

일시보호의 치료적 개입이
장기보호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정책 필요

퇴소

이루어야 할 과업

-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을 정도의 신체 및 심리정서적 회복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완화
- 자신의 문제와 가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기술

개입 내용

- 아동 상담에서 퇴소 다루기
- 가족재결합프로그램 평가 공유하기
- 그룹총과 잘 헤어지기
자신의 변화와 감정 확인해주고
앞으로의 생활 지지, 격려
- 원가정 복귀 절차, 장기시설 전원 절차 안내
- 가정복귀소견서 지자체에 제출

협력과 쟁점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간 사례회의 통해 아동의 거취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퇴소 시기와 사례관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 등 논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치료적인 거점센터 역할의 중요성



아동보호체계 개입 단계의 쟁점 토론문

정 정 호 (청운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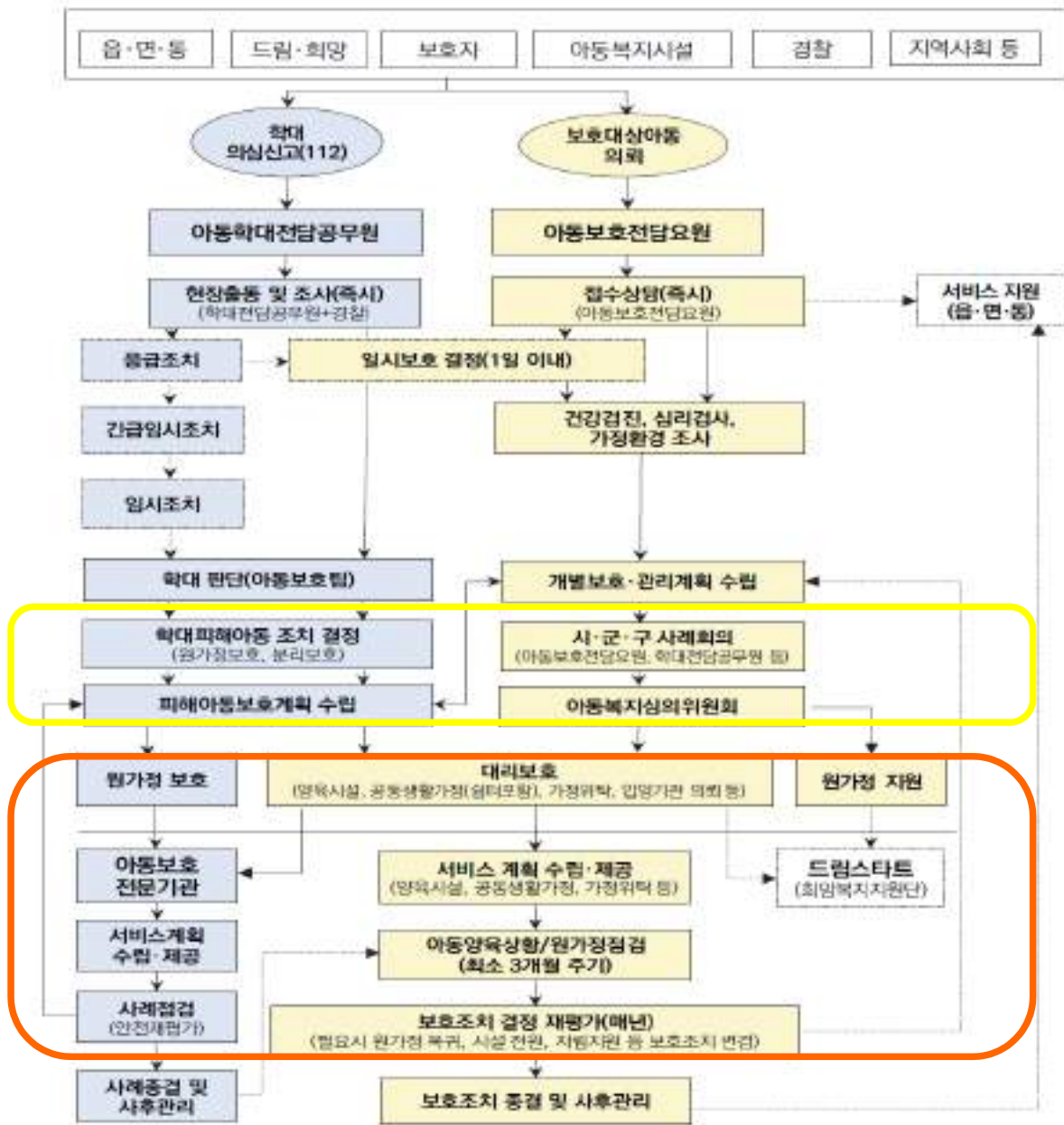


그림 1. 아동보호서비스 단계 및 전담인력별 주요역할

1. 아동학대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업무수행 단계

1) 1 단계: 상담, 조사, 사정단계

- (응급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은 현장에서 학대피해로 인해 피해(의심)아동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인도).
- 피해(의심)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등 일시보호하기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거나,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의 일시보호시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지원, 친부모 및 아동상황 점검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실시. 피해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시설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상시 협의 통해 관할 내 피해아동이 입소 가능한 시설을 파악해야 함.

2) 2단계: 보호계획 및 결정

- (피해아동보호계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여부, 아동의 보호조치(원가정 보호, 분리 보호),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고소·고발 등)를 검토하여 피해아동보호계획(피해 아동보호 계획서) 수립 및 실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통합적 복지 서비스 계획 수립.

3) 3단계: 보호조치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등은 피해아동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
- (양육상황점검/원가정 점검) 학대피해아동을 가정 외 보호(대리양육)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조하여 아동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

4) 4단계: 보호조치 종결

- (보호 종결 또는 변경)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중 아동의 가정복귀 가능여부를 평가,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 진행 또는 사례 종결 여부를 검토 및 시군구에 공유.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 진행 완료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종합

의견을 제출, 가정복귀가 가능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종 가정복귀결정.

- 아동의 분리 보호가 지속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종결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지속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하여 아동의 가정복귀 가능 상황 또는 보호조치 변경 상황을 모니터링.

5) 5단계: 사후관리

2. 주요 쟁점들

1) 가치, 철학 등

-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가족보존 혹은 원가족 복귀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더라도)이 지켜져야 함

2) 인프라, 인력 그리고 예산 부족

- 지자체 내 충분한 수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의 배치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의 훈련, 그리고 안정된 근무여건 보장: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 상 야간(업무 시간 외)에도 빈번하게 발생, 사건 대응 수요가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필요; 경찰조직과 달리 야간출동 상황에 불구하고 다음날 근무 불가피; 결과적으로 관련 업무량의 증대(다른 업무 병행)와 과도한 야간 근무로 인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상 고충 심화, 이탈(다른 보직으로의 변경 등) 가능성 높음.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등이 활용할 자원, 예산 부족(차량, 핸드폰 등/ 아동 일시보호, 건강진단 혹은 발달검사 등 의료서비스, 심리검사 등에 활용할 예산 확보)
- 지역사회내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등의 부족, 확충
- 학대피해아동에게 특화된 전문위탁가정의 절대적 부족, 확충 필요

3) 각 단계별 종사자 전문성 및 프로그램 부족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포함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들(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기관내외 심리치료 인력)의 ‘아동학대’,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와 욕구, 치료와 회복’, ‘원가족과의 교류 및 회복’ 등에 관한 전문성 교육, 수퍼비전 필요
- 아동들이 배치되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의 ‘학대피해아동’ 관련 서비스역량 필요(특히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임상심리사 등이 부재하므로 학대피해아동 배치 시 추가 인력 및 예산 제공 필요,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수퍼비전 필요)

- 학대피해아동에 특화된 전문공동생활가정 필요
- 지역사회 내 활용가능한 상담, 치료기관, 인력의 부족

4) 체계간 협력 및 정보공유

- 경찰/검찰-지자체(전담공무원, 전담요원)-지역사회(일시보호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등) 간의 정보공유(법적 제한 수정 필요) 및 연계협력
- 아동보호체계 내의 사례회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의 내실화

5) 효과성있는 사례관리와 특화된 전문 프로그램(민소영 외, 2019)

-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경찰, 교육청 등 지역사회 내의 여러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음. 즉,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적 관계가 필수적. 다양한 지역 자원과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
- 원가정보호서비스(가족안전계획, 모니터링 체계구축, 분노조절프로그램, 양육기술프로그램,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방임가정서비스 패키지, 집중서비스 패키지 등);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서비스; 가족재결합 서비스 등.
- 차등적 개입 체계 미흡, 기관 간 목적 및 역할 차이로 인한 갈등, 협력에 대한 리더십 부재, 제한된 정보공유 등은 기관 간의 협력을 방해

6) 지역사회 단위 차등적 개입체계 구축

- 경미한 학대의 경우는 신고-조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방적 서비스 위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연화된 차등적 대응 체계가 필요(이봉주 외, 2017)
- 아동보호체계에서 가정외 보호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자원이 집중되기 쉬우나,
- 원가족 복귀한 (저위험) 학대피해아동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차등적 대응체계)에 대한 관심 또한 중요함(드림스타트, 지역사회복지관 등).

보호대상아동(학대피해아동)의 보호체계 개입에서의 현황과 과제 -은평구를 중심으로-

김 미 선 (은평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담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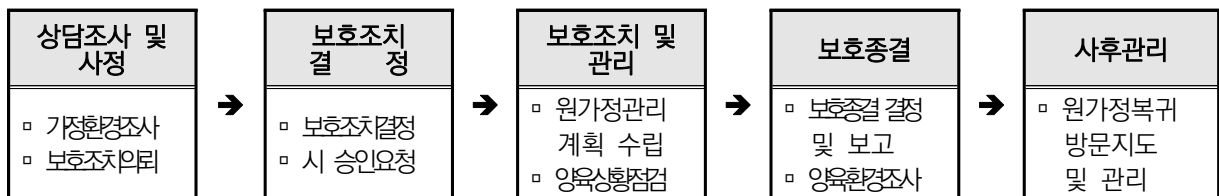
1. 개요

아동학대 현장조사는 아동분리 등 강제력 행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나 민간에서 담당함에 따라 조사거부 및 신변위협이 발생하기도 하고, 민간기업이 발견한 요보호대상아동을 지자체가 사후 승인하는 구조로 공급자 중심의 임의적 보호조치 결정 및 시설중심 보호였다.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아동 보호체계 기반 마련 및 보호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였고, 2020년 10월 1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특별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중심의 보호체계가 구축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민간위탁)이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었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보호대상아동 발생부터 원 가정 복귀까지 전 과정 사례관리를 하고 원가정복귀 후에도 사후관리를 하게 하였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이 책임을 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아동보호 업무흐름도



2. 아동학대 건수에 따른 시설의 부족과 인력 부족

아동학대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은평구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2018년 229건, 2019년 232건, 2020년 391건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18~2020 은평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신고접수			
	계	학대 의심	일반 상담	동일 신고
2018	229	217	2	16
2019	232	224	6	2
2020	391	368	17	6

학대피해아동은 충분한 치료와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아야한다.

하지만 학대피해아동 수는 증가되고 있지만 치료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학대사실을 확인하고 요건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다.

응급조치는 아동학대범죄현장 또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에 72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검사가 응급조치 후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 응급조치의 기간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그래서 재학대우려 가능성이 있지만 응급조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아동을 분리보호할 근거가 모호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즉각분리가 도입되었다. 학대피해아동 대부분이 원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즉각분리가 이루어진 경우 보호시설로 보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 실태를 보면 시설등에서 ‘자리가 없다,’아동의 상태‘ 등을 이유로 입소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사례가 있다.

더욱이 장애아동인 경우는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원가정 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학대피해장애쉼터는 서울에 2개소가 있지만 아동을 위한 쉼터는 아니고 성인 위주의 시설이다.

최근에 은평구 사례를 보면 지적장애 경증의 아동(만 16세)으로 친부의 성학대로 분리 보호를 위해 입소할 시설을 찾아봤지만 입소할 시설이 없고 지적장애와 아동의 뇌전증으로 계속 거부를 당해 어려움을 겪었다.

간신히 학대피해장애쉼터에 입소를 하게 되었지만 성인 위주의 시설이다 보니 또래가 없고 아동에 맞는 프로그램과 지원이 부족하였다.

단기 쉼터여서 중장기 장애인시설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러던 중에 아동이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자해를 시도하여 시설에 보내기 전에 치료가 먼저인 거 같아 입원할 병원을 알아봤지만 병원에서 조차 거부를 당하였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상황에서 경찰과 동행하여

응급 입원으로 정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는 학대피해장애아동으로 만 4세이며, 지적장애 증증으로 영유아장애인시설에 보내야하는 상황이어서 한국장애인시설협회에 올라온 시설위주로 전국에 전화했지만 입소할 시설이 없어 경상남도 창원까지 입소시키기 위해 갔다 온적이 있다.

이처럼 학대피해장애아동은 학대를 받아도 보호할 시설이 부족하며, 시설을 알아보더라도 원거리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장애아동 뿐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며, 7명미만의 공동생활가정의 쉼터는 서울시에 6개에 불과하다.

은평구를 살펴보면 은평구는 시설이 7개,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없고 학대피해아동 일시 보호를 위한 시립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가 있다.

상기 일시보호시설은 현재 초등학교 남·여 대상 정원 30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향후 정원 50명(전 연령)으로 확대 검토 중이라고는 하나 보호아동 수요 감안하면 아직 부족하다.

서울시 보호조치(일시보호)기관 현황

연번	시 설 명	보호 대상	정원	주 소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미취학, 학령기 여아	30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2040-242
2	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	학령기 남아, 남매	50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2247-1391
3	서울특별시립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초등 아동 (남, 여)	30	은평구 백련사로14길 20-11	385-5600

서울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현황

연번	구 분	시 설 명	위치	보호 대상	정원	입소기준
1	쉼터	다운쉼터	관악구	남아	7	· 학대피해아동 중 소규모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 · 단기간(3~9개월) 집중적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이 필요한 아동
2		이룸쉼터	중랑구	여아	7	
3		꿈자람쉼터	동대문구	여아	7	
4		OU쉼터	노원구	여아	7	
5		꿈마루쉼터	강서구	남아	7	
6	공동생활가정	민들레쉼터 (아동학대 치유그룹홈)	관악구	여아	7	· 학대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아동

은평구를 보면 서울시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으로제일 많지만 아동학대 발생 건수와 시설 아동수에 비례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이 응급조치나 즉각분리로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아동의 양육상황점검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례관리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업무량이 1인당 50~60가정 이상이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양육상황점검을 3개월마다 하고있으며,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면 업무량은 배가 된다.

정규 근로시간내에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않고 거의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인력 부족은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사례 개입이 늦어질 수도 있다.

3. 시설의 부족에 따른 개선 방안

학대피해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했다하더라도 시설이 갈 곳이 없어 입소하기 어렵고 장애가 있는 경우는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시설의 부족으로 원 가정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학대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때 시설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등으로 세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학대피해아동은 일시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이용하고 대부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원가정보호원칙이 최우선되어야하는 것은 아동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시설에 분리가 되었지만 시설의 부적응이나 부모 등 보호자의 상황이 호전되어 변경이 필요하거나 아동이 원 가정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 원가정으로 복귀를 할 수도 있지만,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한다.

4. 마무리하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동학대로 인한 심각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아동 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며 새로운 법과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반짝 관심을 가질 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학대피해아동의 분리 보호를 할 때 심리적인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보호에서 원 가정 복귀까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요보호아동, 학대피해아동등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은 가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고려해야할 것은 아동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1부 기획주제

좌장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제3주제 아동보호체계 사후관리 단계의 쟁점

발 표 임윤령(전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토 론 정선영(인천대학교 교수)

김연희(동명아동복지센터 사무국장)

김선숙(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아동보호체계 개입단계의 쟁점 토론문

임 윤 령 (전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보호체계 사후관리 단계의 쟁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후관리 중심으로)

임윤령 (전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Contents

- 01 들어가며..
- 02 아동보호체계에서 사후관리 중요성
- 03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후관리
- 04 아동보호체계에서 사후관리 쟁점
 - 1. 법상 사후관리 의미 모호
 - 2. 업무지침상 사후관리 의미 모호
 - 3. 사후관리 수행 주체 중복에 따른 혼선
 - 4. 사후관리 체계의 조기 안착
- 05 아동보호체계의 사후관리 발전 제안
- 06 마치며..

들어가며..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중상해 사건 증가

아동학대 대응 정책 제시

사후관리 체계의 중요성 대두

현장 적용의 모호점과 괴리감 존재

사후관리의 여러 쟁점 논의 및 해결 모색

종합적이고 발전된 공적 책임의 아동보호체계 내 사후관리 실천과 적용 기대

아동보호체계에서 사후관리 중요성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변화 흐름의 중심

아동보호체계에 있어 사후관리는 정부의 책임과 아동보호과정에 있어 체계적 지원의 안정적 마무리 의미,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의 최종 단계

위기조기 지원에 도움

시설 분리 조치, 분리 조치 이후 원가정 보호, 전원 조치변경 등 관계없이 지속적인 아동 관리로 위기 조기 지원

종결 후 서비스의 영향을 평가

서비스 개입의 인정적 유지와 자원 활용 지속성 확인을 통한 서비스 개입의 효과와 영향 평가 → 아동학대 재발생 가능성 감소효과
- 김세원 외(2020), 아동보호서비스 특성이 아동학대 재발생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24(3).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한 지속적 개입

피해아동과 가정의 자원 활용 정도와 자원의 추가 이용 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속적 개입 가능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후관리

▶ 매년 학대 피해 아동 수의 증가 대비 부족한 개입 기관과 상담원 수로 여러 문제 야기

(전문성 문제, 책임 있는 관리 부재, 서비스의 질과 개입 효과성 저하)



참고: 보건복지부(2020),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



연도	아동학대 건수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아동보호전문기관 1명당 학대 피해 아동 수
2017	2,180	1,859	9.7
2018	2,543	2,195	10.3
2019	3,431	2,776	11.4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후관리

사례관리 종결 이후

▶ 종결 불확실 사례 종결 불가피

- 신고 증가로 인한 상담원 사례 수 증가
- 사례관리 적절성 유지(업무량, 개입 기간 등) 고민
- 고위험 사례 개입 및 진행사례 개입 위해 일부 저위험 또는 장기 개입 사례 종결 불가피

▶ 복합적 이슈 가정 지속 관리 필요

- 빈곤, 정신건강, 가정폭력 및 부부 갈등, 가족결속 결여, 약물 중독
- 보호자 및 아동 장애
- 지역사회 자원 부족



종결 사례에 대해 사후관리 필요성 제기 (누가? 어떻게? 기간은?)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후관리

사례관리 종결 이후

▶ 사례관리 종결 이후 재학대발생에 대한 부담

- 종결에 대한 안도감 Vs 재학대에 대한 우려

→ 다른 개입 방법 강구, 재신고시 담당자 유지와 변경, 타 기관 연계 고민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3개년)〉 (단:건)

연도	부양대상	발생건수	재발(재학대)대비
2017	2,160	189	8.7
2018	2,340	216	10.3
2019	2,011	278	13.8

참고: 보건복지부(2020),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

▶ 종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후관리

- 기존 사후관리의 단점 : 최초 학대(기초선) 대비 학대 정도가 낮아도 재신고로만 개입

(개입 차이 없음 : 사후관리 기간 중 재학대 사례 Vs 사후관리 후 완전 종결 재학대 사례)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후관리

시설 분리조치 이후

- ▶ 아동의 시설 적응 상태 및 감정과 생각에 대한 지속적 확인
 - 아동 시설 적응 과정 확인, 부모에 대한 감정과 원가정 복귀에 대한 욕구 확인
 - 분리조치에 따르는 감정과 미숙, 향후 계획 다루는 것이 필요)
 - 향후 계획과 변화에 대한 대응
- ▶ 시설내 학대에 대해 모니터링 필요
 - 시설내 종사자의 학대, 포레간 폭력, 아동인권 침해, 아동 차별, 업소 시 선별, 힘든 아동에 대한 퇴소 조치 및 권유 등
- ▶ 아동양육시설, 아보전, 공무원 간 입장 차이 존재
 - 자체 협의 - 조정과 지도, 감독 필요성 대두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후관리

원가정 복귀 이후

- ▶ 이전: 지자체의 승인 없이 시설에서 임의로 아동 원가정 복귀
 - 아동의 안전 및 재학대 확인 불가
 - 학대 위기 상황 점검 어려움
- ▶ 재결합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실제 재결합 이후 적응 평가 필요
 - 아동과 보호자 재결합 이후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 및 가정생활 적응 모니터링
 - 재학대 발생 전 즉, 위기상황에서 예방차원의 개입

아동보호체계에서의 사후관리의 쟁점

1. 법상 사후관리 의미 모호
2. 업무지침상 사후관리 의미 모호
3. 사후관리 수행 주체 중복에 따른 혼선
4. 사후관리 체계의 불안정

쟁점 1 - 법상 사후관리 의미 모호

현행 아동복지법(2020.12.29. 일부개정)상 사후관리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항 8호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③항 2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

제28조 (사후관리) ①, ②, ③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한 가족 지원 제공, 행위자의 업무 수행에 거부 또는 방해 금지

제38조(자립지원) ①항 4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항 5호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2021.3.30. 일부개정)상 사후관리

제18조(사후관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라 대략양육 또는 가정위탁하여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항 6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담·교육·치료관리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③항 2호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계획·실시·**사후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①항 5호 **사후관리 실적**

쟁점 1 - 법상 사후관리 의미 모호

사후관리의 주체 및 시점 (아동복지법 제28조 중심)

▶ 사후관리의 수행 주체는?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지자체장(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복지법 제28조 사후관리 주체 : 아동권리보장원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수행(2019.1.15 일부개정)

▶ "아동학대 종료 이후"는?

아동 학대 종료가 아동학대 사례 개입 종료? 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 의미?

사후관리에 의미(사례관리?)

1. 신고 이후 전체 과정? 학대 판단 이후 전체 과정?
2. 피해아동, 가정 사례관리 마지막 단계, 즉 사례관리 종결 이후 과정?

기관장 A "아동복지법의 사후관리는 사례관리라고 봐야 해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사례관리 계획서 제출은 있는데, 제46조에 예보전 업무에는 사례관리가 없어요"

상담원 A "복지법 45조의 사후관리는 신고 이후의 전 과정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 잘 모르겠네요."

쟁점 1 - 법상 사후관리 의미 모호

아동복지법 상 사후관리 대상



시행령의 성과평가 (사후관리 실적)

제46조 ①항 5호에서 사후관리 실적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로 명시됨.

2020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침서 상 사후관리는 원가정 복귀 이후의 3개월 관리가 유일.

(가정 내 보호 중 사례종결 후 사후관리 없음)

쟁점 2 - 업무지침상 사후관리 의미 모호

2008~2020업무수행 지침 사후관리

참고: 보건복지부, 중앙대응요원근거장, 2008, 2009, 2010, 2017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진흥원, 2020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서

	2008	2009	2012	2017	2019	2020
사후관리 목적	종결사례에 대한 재 확대 예방과 가족의 안정유지	종결 이후, 피해아동과 행위자, 가족이 발생한 진전을 감화, 안정적 유 지 지원	종결 이후 재확대 여부 확 인, 재확대 예방과 가족의 안정유지	종결사례, 조기지원사례 에 대한 재확대 예방 및 가족의 안정유지	종결 이후 피해아동 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및 재확대 예방과 여 부 확인 및 안정유지	원가정내 보호 사례 종결 이후 사후관리 없음.
사후관리 기간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3개월간	최소 3개월 이상	-
정기보고초기 경우	사건 특과 협의					-
사후관리기 여러모 경우	차별 사례회의를 통해 향후 계획			사례회의를 통해 향후 계획	동결사건예외로 종결 중후 계획	-
사후관리 방법	매월 1회 직접방문, 전화상담	좌동	좌동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최소 1회 피해아동 대 면)	1. 행위자와 동거 -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및 전화 상담(1개월 이내 이동대선) 2. 비동거하는 경우 - 1개월 이내 전화상담	-

쟁점 2 - 업무지침상 사후관리 의미 모호

2008~2020업무수행 지침 사후관리

	2008	2009	2012	2017	2019	2020
사후관리 내용	- 도울데 할수없을 경우 연계되지 않았음을 통해 드림과 지원 제공 - 회복 및 외래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모니터 링 유지	좌동	좌동	- 피해아동, 행위자,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제공 - 회복 및 연계기관과 협력하 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유지	1. 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 - 이동과 행위자 상대의 변화 확인 - 지역사회 연계 및 의뢰하여 지속적모니 터링 유지 2. 비동거하는 경우 : 아동 안전 여부, 재 확대 위험성을 발생여부 확인	-
아동 원가정 복귀 후 모니터 링 실시				가정복귀일로부터 1개월 간 주1회 3개월간 월1회 이상 가정방문 및 전화상 임 등 피해아동 또는 확대행위자, 가족, 주요관계자들을 통해 재확대 여부 확인	가정복귀일로부터 1주일 이내 가정방문, 아동 안전 여부 및 처음 정도 확인 이후 1개월 간 주1회, 3개월간 월1회 이상 가정방문 등의 방법 피해 아동 또는 보호자, 가족, 주변관계자들을 통해 재확대 여부 확인	

상담원 B * 기존 사후관리가 없어지고, 종결 전 모니터링이 생긴 이유를 모르겠어요. 교육 때 설명도 없었고... 저는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사례가정에 설명하기 힘들고... 보호자에게 종결 전 모니터링을 설명하니, "이전 것과 똑 같은 거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상담원 C "저는 사후관리보다 종결 전 모니터링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 진행 절차가 너무 자주 변해요. 직년 10월, 올해 1-2월,
4월에 바꿨는데, 6월에 또 바뀐디네요."

쟁점 2 - 업무지침상 사후관리 의미 모호

2019 업무수행 지침



- 사후관리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내용 포함
- 사후관리 방법과 내용에 있어 행위자 동거의 비동거의 경우로 구체적 내용 구분 및 명시
- 분리 조치 이후 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명시

2020 업무수행 지침



- 2020년 업무수행 지침에서는 '사후관리' 생략(?)
- 사례 "종결 전 모니터링" (3개월)이 사후관리의 역할
- 원가정 보호 내 서비스 개입의 최종 종결 이후 사후관리 존재하지 않음.
- 분리 조치 이후 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명시

쟁점 3 - 사후관리 수행 주체 중복에 따른 혼선

아동보호서비스 후 사후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침과 아동보호서비스 배뉴얼 불일치

▶ 원가정 보호시 사례종결 이후 사후관리 명시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 종결 이후 사후관리가 없음

▶ 피해아동 가정복귀 후 사후관리 역할 중점으로 혼선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함께 공동 수행

▶ 상담원 C : "작년에 전담요원이 배치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의와 가정복귀 아동 사후관리를 같이 했는데, 이후 연락은 서로 없어요."

▶ 아동보호전담요원 A :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정보들 안 줘요. 우리가 왜 줘야 하냐고, 쓸 의무도 없다 하고"



쟁점 3 - 사후관리 수행 주체 중복에 따른 혼선

가정복귀 후 사후관리

[각 지자체별로 가정복귀 절차 관련 시·구제할 업무분장]

업무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후관리 후 가정복귀	1) 가정복귀 요청	가정복귀 요청 시 의 전환적 접근, 가정복귀 기능이 부동 연결이 확인	가정복귀 요청 시 의 전환적 접근 등 안착이 전담공무 원에게 공유	사후관리 중 가정 복귀 필요 시 전달 공무, 전달요원 상황 공유
	2) 가정복귀 결정	관련 서류 검토 후 사태를 정리 할 것 에 대한 상황 보고	사후관리 진행 후 전 담공무원·대외보 고과 공유	가정복귀프로그램 진행 및 가정환경 조사시(공공기관) 전담공무원에게 제출
	3) 복귀 후 사후관리		가정복귀 후 모니터링(가정방문 등) 시 아동 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문요원 동행하여 공동수행	
사후관리 후 가정복귀	1) 가정복귀 요청	출발 시에 중 가정 복귀 필요 아동 및 자 시(아동권 가 정복귀 프로그램) 등 정보 요청	전담요원 관리 중 가정복귀 필요 시 전담공무원 상황 공유	가정복귀프로그램 진행 및 가정환경 조사시(공공기관) 아동복지담당공 무원에게 제출
	2) 가정복귀 결정	관련 서류 검토 후 사태를 정리 할 것 에 대한 상황 보고	사후관리 진행 후 이 보전 결과 공유	
	3) 복귀 후 사후관리		가정복귀 후 모니터링(가정방문 등) 시 아동 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문요원 동행 하여 공동수행	

▶ 상담원 A

"아동보호전문요원이 관할 지역 중 몇 개 지역에 선발되었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구요. 아직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없어요. 드림스타트 업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 기관장 B

"저희 지역 아동보호전문요원과 협업을 하긴 했는데 학대건과 관련하여 가정복귀 이동을 함께 관리하는데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 아동보호전문요원 A

"아동이 시설로 가면 시설 관할 전문요원이 관리하고, 아동이 가정 복귀하면 우리가 관리해요. 시설 있는 지역 전문요원은 관리수가 많아서 힘들죠."

쟁점 3 - 사후관리 수행 주체 중복에 따른 혼선

아동보호팀 내 역할 모호

업무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전문요원
1단계 현장 조사, 사정	• 아동의 탈선보호 시 긴급경전, 승려장서 등 확인 • 소아우 및 아동상담실 • 개별/대동/공동/공동	• 현장조사/현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요원 • 공공기관 부행부서(신당/아르비 등)
2단계 (현장 조사 및 결정)	• 개별/대동/공동/공동 • 아동복지상담실/현장 상담실 • 시·군구 내 복지회 및 아동복지심의회의 참여	• 피해/동반/공동/공동
3단계 현장조사	• 현장조사팀 • 동지역의 보호기관(교사/부원) • 동지역 직원 • 지역사회의 내·외부기관 및 연계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모니터링
4단계 현장조사/결정	• 보호복지 상담실/현장 상담실 • 아동복지상담실/현장 상담실	• 사례관리/상담실/현장 상담실
5단계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아동보호전문요원 A

"아동복지전문요원과의 협력에 어려움이 있어요. 상담사로 왔다고 생각하죠. 내부적으로도 분리조치가 안되면 딱히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례인데, 전문공무원은 1명이기에 현장조사에 동행하기도 하죠. 현실상 같이 나가게 돼요"

"아동복지시설 전담 공무원이 있으니 아동 입·퇴소의 수당지급에 있어 분담해서 같이 역할을 해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현장 실무에서 공무원과 기관에서는 내가 다 뜨내기 같고,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고, 역할 분담도 분배도 제각각인 거죠."

쟁점 3 - 사후관리 수행 주체 중복에 따른 혼선

원가정 외 보호기관과 협력 모호

원가정 외 보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사례관리)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 시·군·구 사례회의 참석 • 지역사회 내 지원방법 및 연계 • 양육상황점검 협조 • 원가정 지원(요양보호, 지원 등) • 사후관리(가정방문)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활동 동행요청 시 동행출동 및 조사지원 • 사례관리계획 계획 수립 및 제공 • 시·군·구 사례회의 참석 • 지역내부 내 지원방법 및 연계 • 양육상황점검 공동 업무 수행 • 사례관리 운영점검 및 중점 • 가정학구 프로그램 진행 • 사후관리(가정방문) 공동수행

* 이외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상담전문원, 원가정외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사례관리 중 협력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조 요청 및 정보 공유 등 가능

▶ 아동보호전문요원 A

"가정위탁지원센터도 그렇고 아보전과도 그렇고 경계없이 모든 일에 중복이 되는 거예요. **태타 사례관리 하라고 하는데 말머 태타 사례관리지 더 애매해요.** 처리리 우리가 하던지 그 쪽에서 하던지..."

"삼부조직이 아니니, 정보교환 자체도 안 되고 업무에 내가 어디까지, 아보전은 어디까지, **일이 중복되고 이중 일이 되죠. 일을 서로 떠넘길 수도 있어요.** 협조가 안되면,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애매하죠."

"아보전은 아보전 대로 기입하는 양식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입하는 있고, 같은 학대 가정에 **중복되는 일인거죠**"

▶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A

"협력 정도는 지역마다 차이 나요. 어떤 곳은 협조가 잘 돼서 원거리나 연락 안되는 가정을 전담요원이 대신 확인 해 주거든요"

쟁점 4 - 사후관리체계의 불안정

사후관리 체계의 중심-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안정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일관되지 못한 신분

아동보호전담요원 A "전담요원이 실제 공무원인데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시간 일기제 있고, **전담요원도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자리를 급하게 만든 느낌이에요.** 2년 계약에 5년까지 연장도 있고, 이 제도가 중간에 어떻게 바뀔 지 모르죠. 없어질 수도 있고... 1년씩 계약하는 지자체의 전담요원은 책임감 있게 일하지 못하는 구조죠. 임금이 명할 수당도 없더라고요."

▶ 수퍼비전 체계 및 업무 지원체계 부족

아동보호전담요원 A "풀어볼 때가 없어서 답답해요. 업무를 잘 풀어서 **보정원에 전화하거나 주변 지역 전담요원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못 해줘요**"

▶ 통합적 사후관리 역할에 있어 정보 수집 및 협업의 한계

아동보호전담요원 A "체도 자체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일을 물어보려고 하니 **해당사례관리라고 하지만 그 기관에서 볼 때는 정보 제공의 의무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협력이 안되요.** 태뉴업에 있어서 같이 사례관리를 해 줄 수 있냐고 물으면 "내가 왜 보고 해야 하나? 우리는 우리만의 정보보호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공유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나워요"

아동보호체계에서의 사후관리 발전 제안

1. 법상 사후관리 의미 정리
2. 업무지침상 사후관리 의미 정리 및 일치
3. 사후관리 수행 주체 역할과 업무 구분
4. 안정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제안 1 - 법상 사후관리 의미 정리

사후관리 주체, 시점, 의미 정리 및 처벌 규정 마련

1. 아동복지법 제28조 ①, ②, ③항 사후관리의 주체인 '보장일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 **지자체장(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을 포함**을 추가 또는 실제 사후관리 주체만 기입
2. ①, ②항에서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 → '아동학대 개입이 종료된 이후' 또는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종료된 이후' 로 수정 필요
3. ③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벌 조항 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사례관리' 명시

아동복지법 제 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③항 5호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로 변경 또는 추가

성과평가에서 사후관리 내용 정리

법상 사후관리 실적 평가: 분리 조치 이후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결 전 모니터링'을 포함할지 논의와 더불어 구체적인 명시 필요. 이에 따른 업무 지침서 내용 수정 및 전산 수정 필요

제안 2 - 업무지침상 사후관리 의미 정리 및 일치

아보전 사후관리 체계의 검토 (종결 전 모니터링 Vs 종결 후 모니터링)

구분	목적	기간	방법
종결 전 모니터링	사례관리 종결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 전에 아동의 안전이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3개월	- 학대행위자의 동거 : 방문상담1회, 월1회 이상 유선상담 실시 - 학대행위자의 비용거 : 월 1회 유선상담 실시
종결 후 사후관리	종결 이후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예방과 여부 확인 및 안정 유지	3개월	- 학대행위자의 동거 :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및 전화 상담 (1개월 이내 아동매번) - 학대행위자의 비용거 : 1개월 이내 전화상담
구분	장점		단점
종결 전 모니터링	- 종결에 앞서 최종 종결해도 되는지 지속적인 점검 가능 - 과정을 통해 가족과 종결 준비, 종결 평가 오류에도 추후 수정 가능 - 기간 내 위험 발생시 실종관리 사례 대상 변경 또는 재신고 가능 (순환적 과정)		- 사례관리의 종결 이후 사후관리 단계 부재. - 이전 사후관리와 차이 모호(사후관리라고 하기에는 불확실) - 개입 이후 단순 점검으로 3개월 진행, 전산 문보로 대체 - 사례가정에 관리 기간 9개월 설명(6개월 개입 3개월 추가)
종결 후 사후관리	- 종결 이후 안정적 유지 확인, 지역사회 연계 - 기존 사회복지 실천 및 사례관리 실천의 의미와 일치 (이해가 쉬움) - 아동복지법상 사후관리 업무 수행과 일치		- 사후관리 시 재학대 발생은 재신고로만 개입 가능 - 사후관리의 형식적으로 진행(종결 후리 연성) - 건호 사례가정에서 종결했는데 찾아온다고 거부적.

제안 2 - 업무지침상 사후관리 의미 정리 및 일치

아보전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교육 강화

▶ 현장 인식 차이를 좁히고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교육 강화

- "종결 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와 "완전 종결 이후 형식적인 사후관리보다 종결전 모니터링이 더 맞다"라는 두가지 인식 존재
- 종결 전 모니터링/사후관리/종결 전 모니터링+사후관리 등 다양한 적용에 대한 검토와 논의 / 노보전의 경우 종결 점수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방법 상이
- 각 수행 방법과 내용의 목적, 필요성 전달, 수행 차이에 따른 효과성 연대, 수행 방법의 차별 등 교육 필수

▶ 종결 이후 지역사회유관기관 포함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아보전의 상담원 수와 개입되는 사례 수를 고려, 권가정 보호 서비스에서 사례관리 종결시 지역사회유관기관을 포함한 통합지원 구축
- 김희모 (200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 피학대 아동 발견 및 사후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5-2, 21-40
- 기관장 C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돌아지는 학대 신고에 상대적으로 집중할 수 없는 것도 사실, 사후관리는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의뢰하여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어요"

법, 업무지침, 매뉴얼의 사후관리 체계의 일치 및 전산 입력 개선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업무수행지침, 아동보호서비스 간 내용 일치 필요
- ▶ '종결 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 대한 전산 입력 사항 개선 필요

제안 2 - 업무지침상 사후관리 의미 정리 및 일치

뉴욕아동보호서비스: 사례 종결에 앞서 심도 깊은 점검 사항 확인 및 논의(3개월 과정)

미국 뉴욕의 아동학대예방매뉴얼을 살펴보면 사례관리 종결 이후 사후관리 단계는 없었으며, 사례 종결을 결정하기 위해 종결 전 다음과 같은 점검 사항들을 확인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침.

종결에 앞서 서비스 제공자, 수퍼바이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가족 현재 상황을 논의함.

- 서비스 계획 목표를 향한 진전: 가족 내 아동 안전, 향후 학대의 위험 감소 정도, 보호자와 아동의 안전한 상호작용 여부, 아동의 기본 욕구 충족, 아동에 위협을 야기하는 가족 내 물리적 조건과 관계 확인
- 가족 행동과 기술의 개발: 아동보호서비스와 접촉하게 한 행동과 조건, 아동의 안전과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부모의 행동, 변화를 시도하는 부모 행동,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어떤 기술과 지식을 배웠는지,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 강점 확인
- 지원과 자원에 대한 사정: 가족 팀이 얼마나 강한지,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얼마나 강한지, 지원을 구하고 이용할 의지가 있는지, 필요한 지원의 양과 유형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지, 아동보호서비스 개입 없이 가족의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

위의 사항에 대한 검토와 목표가 충족되면 사례를 종결하는 것에 가족과 논의함. 가족의 성과와 그들이 만들어온 진전을 강조하고, 가족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 네트워크를 상기, 종결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함.

-참고: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2015). Preventive Services Practice Guidance Manual

제안 3 - 사후관리 수행 주체 역할과 업무 구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지침 개선



▶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주체들 사이 명확한 역할과 업무 구분

- 아동보호팀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관련 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간 역할과 업무 구분
- 가정 외 지원 기관과 전담요원, 전담공무원 간 역할과 업무 구분

▶ 통합적 사후관리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법, 공동 사례관리 과정 명시

- "필요시 협의하여", "협력하여", "협조하여" 보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아동보호전담요원 역할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침 필요

- 예: 상담, 조사, 사정, 보호계획 및 결정, 보호조치, 보호조치 종결,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기술
- 주기적인 사례점검 및 아동보호기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메타 사례관리에 대한 권한 명시

▶ 수행 시기 (점검 시기)

아동보호서비스 수행간 기간 중복(중복 중복)

아동보호서비스 수행간 기간 중복 최소화

- 서로 겹치지 않도록 중복 피해서 설정



제안 4 - 안정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전문성 향상을 위한 슈퍼비전 및 교육 체계 강화

▶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주체들의 통합적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강화

- 유관 기관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배치 및 역할 안내,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교육을 통해 실제 공동 사후관리 수행 시 역할 구분과 협력 내용 조율
- 사후관리의 중요성, 실천 방법, 과정 관련 교육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슈퍼비전 체계 구축

- 업무 어려움 해소를 위한 즉각적 슈퍼비전 체계 마련(보장원 내 또는 시도 단위 슈퍼비전 체계 구축)
- 아동보호전담요원 어려움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현재 0독으로 개별 연락)
- '사후관리'는 직무중요성과 수행역량 모두 낮은 인식을 보임. 따라서 사례관리 전 과정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과 슈퍼비전이 필요

- (박은주 (2019). IPA기법을 적용한 사회복지사례관리 직무수행 및 슈퍼비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 278-292)

제안 4 - 안정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사후관리 운영 체계 개선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

- 사후관리의 독립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단독 업무 보장
- 각 지자체 마다 개별적인 신분의 통일 필요 (공무원, 공무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등)
- 사후관리 대상 아동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장기 근속 안 마련(관리기간은 5년)

▶ 아동보호서비스 담당 주체들 간의 협력과 조정, 서비스 통합을 위한 시·도 단위의 컨트롤타워 필요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아동양육시설이 권역단위로 구성
 - 지역 내 아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 기관(경찰, 법원, 학교 등)과 사후관리 체계 구축필요
 - 지역별, 기관별, 사업 주체별 조정과 서비스 통합, 조정, 관리 요하는 컨트롤타워 반드시 필요
- 류정희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체계의 거면. 월간 복지동향(249), 5-15.

마치며...

“사례관리 과정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사후관리다**”

- Arthur J. Frankel · Sheldon R. Gelman, 사례관리 개념과 기술에서-

감사합니다

아동보호체계 사후관리 단계의 쟁점 토론문

정 선 영 (인천대학교 교수)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보호체계 사후관리 단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 그에 대응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임윤령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동학대실천현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저를 포함한 아동복지 연구자 및 관계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는 최근에 도입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을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아동보호체계에는 학대 외의 이슈로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기회가 닿아 참여하였던 ‘원가정복귀 표준 프로세스 정립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정선욱, 강지영, 김진숙, 정선영, 2021)’의 경험을 토대로 토론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학대피해아동과 관련해서 이번 발표를 통해 깨닫고 놀라게 된 점은 원가정에서 보호되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2019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30,045건 중 원가정보호가 지속된 경우는 25,206건(83.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사후관리도 학대 혹은 학대 외의 이슈로 가정외 보호에 배치되었다가 원가정으로 복귀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되고 있을 뿐입니다. 2019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중 최종적으로 원가정복귀가 이루어진 경우가 1,000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공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후관리 케이스는 소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체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아동복지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서 사후관리와 관련된 용어가 비일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은 놀라움을 넘어 부끄러움 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때에 따라 ‘사후(事後)’에서 의미하는 ‘사(事)’는 아동학대 사건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종결-사후관리-완전종결’과 같이 종결이라는 용어가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아동학대현장의 복잡다단함이 용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령이나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각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의 명칭을 정한다면 용어로 인한 혼란을 부분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앞서 말씀드린 ‘원가정복귀 표준 프로세스 정립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후에 개입하는 단계를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명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니다. ‘사후관리’라는 용어가 갖는 느슨함을 극복하고 원가정 복귀 후 재분리를 막기 위해 가족기능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언어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발표문을 보며 아동학대 실천현장 경험이 없는 저에게 궁금한 점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사이에는 ‘종결’이라는 결정이 놓여 있습니다. 사례 관리는 이론적으로는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종결되지만 만성적이고 복잡한 이슈를 갖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서 재학대 가능성이 0%에 도달하였을 때 종결을 결정짓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 사례개입이 종결되느냐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강도, 빈도, 기간에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가족 기능이 회복되었을 때 학대 사례 개입이 종결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수준이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서는 비슷하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기관간에도 유사하게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학대 혹은 학대 외의 이슈로 가정에서 분리되었다가 복귀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배치가 완료되는 시기 이후에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업 유형이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과도기적인 현재 상황에서는 아동보호전문요원의 업무상 위계가 불확실해 ‘메타 사례관리’라고 여겨지고 있는 아동보호전문요원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유관기관과 사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업무 중복으로 인해 소진과 낭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에는 사후관리 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성공요소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양육시설 사후관리 중심으로

김 연 희 (동명아동복지센터 사무국장)

아동보호체계가 공공의 강화성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학회의 개최목적이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듣고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위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의 입장과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라는 것이 현장실무자 입장에서는 참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체계 사후관리 단계의 쟁점"에 대한 발표를 그 중요성과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후관리, 쟁점, 마지막으로 발전제안까지 **민관의 시점에서 발췌**해주시고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세밀히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발표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사후관리의 쟁점들에 대해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며 또한 **현장에서 어떻게 관과 협업을 하며 촘촘한 사후관리에 대해 준비를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게 된 시간이였습니다. 다만, 발표내용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후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저는 아동복지양육시설(원가정의 보호기관) 입장에서의 사후관리중심으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철저한 아동중심의 사후관리계획(사례관리)이 구축되어야 하며,
그 책무와 실천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 조항만 보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성장에 대한 지원 원가정 복귀에 대한 책무를 하도록 명명된 것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에 따라 기아, 미아, 신체학대, 정서적학대,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원가정의 온전한 보호속에서 아동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아동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국 어른들이 아동을 보호하게 되는 시설(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등)을 결정하게 된다. 물론,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는 그 결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동

의 입장에서 보면 아동이 원해서 가족에서 분리된 것도 아니고 원해서 시설에 입소한 것도 아니기에 정말 아동의 세세한 정보를 알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아동은 시설에서 지내는 내내 상황이 어찌되었든 부모를 그리워하고 원가족 복귀만을 기다리게 된다. 아동입장에서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기에 그 순간부터는 철저하게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중심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개별적 사례관리가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소 전까지는 공공에서 가족중심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사례관리의 마무리가 결국, 가족과 분리하여 아동의 시설입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면 시설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동의 가족력과 개인력등을 중심으로 사례관리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는 곧 시설에서 아동의 생애주기와 발달단계에 맞는 서비스들을 계획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는 아동의 원 가정복귀 계획도 당연히 셋팅이 되어진다. 아동 사례관리 (양육계획 및 적용, 재사정)를 직접 시설에서 해왔고 아동의 개개인 맞춤형 “원가족 복귀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가 원가족으로 복귀 후 사후관리까지 해왔던 시설에서는 갑자기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명아래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생기고 그동안 시설에서 해왔던 아동양육계획을 공공에서 하고 점검을 한다고 하니 과연 아동양육시설(그룹홈, 가정위탁 포함)의 역할 중 협조라는 역할에 고민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현장을 책임지며 입소부터 퇴소까지 그리고 퇴소 후 관리까지 묵묵히 해오던 모든 원가정의 보호기관들에게 이제는 아동의 사례관리를 어디까지 책임지고 하라는 것인지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 경계에 대해 모호함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아동복지법 4조 2항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고 국가가 책무성을 지니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지만 그 실천의 주체가 어디냐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관(공공)·민(원가정의 보호기관) 모두 아동복지법을 위반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

○ 관(공공)에서 아동복지법을 위반 할 수밖에 없는 구조

2016년 아동복지법 15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및 개별보호, 관리계획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9년 3월23일 시행)”고 되어 있다. 분명 지방자치단체장은 상담, 정기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및 개별보호, 관리계획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해야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직접 공공에서 해야 하는 것은 의무지만 장기근속이 보장되지 못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저 업무를 혼자서 다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에 업무의 과중과 케이스의 과다로 어쩔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코 혼자 다 할 수 없다.

○ 민(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 아동복지법을 위반 할 수밖에 없는 구조

또한, 아동복지법 15조의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매년 점검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양육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하여 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1년에 2번의 시설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설에서 혹시나 아동학대나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아동상담 및 직원상담을 1년에 2번 또는 특별점검등으로 점검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지자체 각 전문기관들에 의해 시설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공공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조치된 이후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삶이 점검되지 않아 아동최상의 이익이 지켜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발표 후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원가정의 보호기관들에서는 아동들을 “CASE BY CASE”로 개별화된 사례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며 재 사정 후(원가정복귀프로그램 포함) 또다시 사례관리계획을 세우는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공에서 아동들의 보호조치계획을 세우고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며 그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점검을 한다고 하고 있다. 이제는 아동보호체계를 공공에서 주도하여 한다고 하며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역할을 협조 정도로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보니 원가정의 보호기관들은 지금껏 아동보호서비스의 최상위 원칙인 “아동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이념아래에 아동입소부터 퇴소 후까지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당연히 감당하고 오고 있었던 이 시점에서 이제는 시설에서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그냥 공공에서 아동보호조치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고 하니 그냥 공공에서 세운 그 계획에 맞춰 실행하는 그 정도까지의 역할만을 담당해야한다면 결국, 원가정의 보호기관들은 법을 위반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로 관(공공)도 민(원가정의 보호기관)도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현장실무가 되려면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아동과 원가정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계획과 사후관리의 역할분담 및 협업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민·관·원가족의 협업)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보면 보호하는 주체인 시설은 아동의 귀가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는 공공성강화되기 전부터 아동귀가 여부결정권은 원가정의 보호기관에는 없었고 귀가조치에 대한 시설장 의견서가 첨부되어 그 의견을 최대한 믿고 함께 해주던 공공이 결정의 주체였는데 현재의 시각은 마치 원가정의 보호기관들에서 마음대로 아동들을 퇴소시키고 귀가조치 시킨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에 공공의 그러한 시각들이 현장에서는 매우 불편하다. 결국, 시설의 권한은 무엇이며 아동을 보살피고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준

비했던 시설의 권한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왜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기틀을 잡아갈 때 원가정의 보호기관들의 전문성은 무시된 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만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현장에서는 바뀌어가는 아동보호체계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시설의 역할도 애매모호한 상태가 된 현실이다. 이젠 위와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여러 원가정의 보호기관들 그리고 원가정과의 협력을 어떻게 구축할건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와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며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며 온전한 따뜻한 가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민·관·지역사회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역할인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족구성원이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절대 공공에서는 원 가정 복귀나 사후관리를 성과나 수치화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원가족의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하며 정확한 정보 습득만이 원가족 각자 구성원들에게 맞는 직·간접 서비스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그 계획의 결과로 원가정복귀가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사후관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치며...

본 기관은 아동복지 양육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20년 가까이 (2001년~ 2021년현재까지) 진행하게 된 이유는 입소아동의 유형이 IMF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기아, 미아 아동들이 대부분 이었다면 IMF사태 이후인 99년에는 그 해만 16명의 아동이 경제적 사유로 입소를 하였고 같은 해에 우리나라 사회에 아동학대인식과 아동정책을 완전히 바꾸게 한 “영훈이사건”을 촉발로 우리사회에 아동학대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도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면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 했으며 이때 본 기관에서도 결국, 2001년부터 입소 때부터 퇴소할 때 까지 “원가족복귀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아동을 맡긴 부모는 죄책감과 자존감의 저하로 점점 아동과 멀어지거나 가족복귀의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고 아동들도 가족과 가정에서부터의 분리로 인하여 상처가 깊어져 증오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관에서 지지체계를 구축을 해야 한다는 책무성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02년부터 3년간 지역사회의 해체위기를 맞은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해체되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행복한 가족만들기 프로젝트”를 3년간 진행하였다. 본 기관만 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한 것이다. 당시,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본 기관과 관악구청과 관악경찰서, 은천초등학교가 함께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지함으로써 결국, 본 기관

에서는 해년마다 꾸준하게 원가족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위기를 맞은 가정에 함께 함으로써 지역사회내 시설입소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 사례에도 나타나듯이 시설 혼자 힘으로 공공의 힘으로 만으로 결코 한 가정을 지켜낼 수 없다. 민·관·지역사회가 함께 각자의 역할에 책무성을 가지고 협업하며 지지체계를 그물방복지처럼 촘촘하게 마련해 놓을 때 아동복지법 제4조3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지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민(시설)도 관(공공)도 부모의 자리를 대신 할 수 없다.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멋진 그리고 신뢰와 협업을 강조한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우리(민·관)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업을 한다면 그 마을이 우리(민·관)가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공공(관)의 책무성과 원가정의 아동보호기관(민)의 실천주체성**이 잘 어우러진다면 원가정복귀가 좀 더 명확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로 연결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아동보호체계 사후관리 단계의 쟁점 토론문

김 선 속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아동보호체계 사후관리 단계의 쟁점을 하나씩 짚어볼 수 있도록 발표를 준비해 주신 임윤령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발표문을 보면서 사후관리단계의 문제점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의 두 분의 토론자가 이미 사후관리 단계의 쟁점별 대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본 토론자는 사후관리 단계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후관리단계를 포함하여 아동보호체계가 개편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달체계상의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공적 차원의 개입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민간차원의 현안 대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또한 2016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책임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두어 보호대상아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전히 책임과 권한의 문제는 분명하게 정리되지 못한채 아동보호체계가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과는 별도로 여전히 아동보호 업무가 민간에 위탁됨으로써 서비스의 책임성, 연속성을 비롯한 권한의 문제에 이르기 까지 이전에 발생하였던 문제들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다. 원가정복귀 후 사후관리 체계가 없는 것도 결국은 아동복지체계의 문제로부터 파생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8년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자 시작한 국가의 의지표명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2019년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고, 2020년 아동 청소년 학대방지대책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으로 이어졌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여기서 아동복지체계 개편의 핵심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담당하고,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을 위한 보호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라 할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체계간 연속성 보장과 보호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원가정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공적입양체계 완비를 그 내용으로 꼽을 수 있다.

본 발표에서 발표자는 업무지침상 사후관리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내용을 업무수행 지침을 비교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원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가 부재하다는 것은 아동보호 체계 개편 이전에도 여전히 문제로 제기되었던 내용이다. 이것은 우리의 아동보호체계나 아동 정책이 여전히 예방적 사전적 대처보다는 치료적, 사후대처에 치중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할 수 있다.

지난 20년 7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의결되어 발표된 ‘아동학대방지대책’에서는 아동·청소년 학대 위기예방과 조기발견, 재발방지를 위해 ① 정보공유 및 연계협력 강화(위기아동 조기발견 체제 강화, 부처간 위기아동청소년 정보연계, 학대아동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②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아보전,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학대조사업무 공공화 전면 시행 등), ③ 친권제한·보완(징계권 폐지, 즉각분리제도 등), ④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의 정책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2021년 1월 19일 ‘아동학대대응체계강화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체계의 원활한 작동과 입양체계의 공적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서비스 진입창구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공공화, 단일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서비스 수행체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아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즉, 시군구단위에서 서비스 진입과 서비스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체계는 중앙차원의 아동권리보장원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지원의 적시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아동권리보장원 종사자들과 시군구의 학대조사공무원을 대상의 인터뷰에서 중앙의 서비스 지원체계와 현장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서비스지원체계가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선숙 외, 2021. 6. 예정).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문성(정책방향, 가이드 부족) 및 정체성(정책지원, 현장지원 역할의 모호함)의 한계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사실상 아동 보호체계에 있어서 원가족 복귀 이후 사후관리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성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보호를 좁은 의미에서 보호체계에 포함된 아동에 한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보호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원가족 복귀 이후에도 일정 기간의 사후관리 기간을 통해 개입하고, 이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아동복지법에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가 작동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전달체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른 아동복지체계의 개편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화와 전문화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아동복지 정책체계 뿐 아니라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서도 서비스 수행단위와 중앙의 지원체계를 연결할 수 있는 광역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아동복지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사후관리 뿐 아니라 아동보호체계 전반적으로 개편의 의의를 찾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조건이다. 특히 발표자가 발표내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공공과 민간의 역할혼란과 갈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퍼비전 제공, 사례전문위원회의 현실적 활용불가능의 문제, 즉각분리 시행에 따른 혼란, 아동분리에 대한 판단 어려움 등은 적시성과 책임성 그리고 능률성이 확보된 보다 근거리의 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2부 종합 토론

좌장 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

토론 1부 발표자와 그리고
강선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익(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영주(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은정(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정선희(법무부 아동인권특별추진단, 검사)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토론문

강 선 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I. 문재인 정부 아동보호관련 정책 현황 및 실태

- 문재인 정부 들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여러 차례 정부차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옴.
 - ▲ 2018년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2020년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등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아동학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파시킴.
- 2019년 복지부 내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가시적 성과도 나타남.
- 또한 지난해 온 국민을 슬프게 하고, 또 공분케 했던 ‘양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는 올 1월, 현장출동을 의무화하고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함.
-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 (2021년 2월) 이모부와 이모가, 동생이 맡긴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하다 욕조에서 숨지게 한 ‘용인 10세 아동 사망사건’
- ▲ (2021년 2월) 생후 2주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익산 신생아 학대사망사건’
- ▲ (2021년 3월) 계부와 친모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학대하고 굶기다 숨지게 한 ‘인천 중구 8살 여아 학대사망사건’
- ▲ (2021년 4월)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21개월된 아이를 이불에 엮드리게해 자신의 다리와 팔로 아이 몸을 압박해 사망하게 한 ‘대전 어린이집 원아 사망 사건’
- ▲ (2021년 5월) 사회복지사인 양부의 학대로 2살 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진 ‘화성입양아동 학대사건’이 발생함.

- 복지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른들로부터 손찌검과 발길질을 당하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동학대 사례는 10만7,432건** 같은 기간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도 160명에 이릅니다.
- 끊임없이 반복되는 아동학대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무엇을 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아동학대 ①발견 및 조사 ②분리 및 보호 ③치료 ④사후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각 단계별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점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II. 아동학대 대응체계 단계별 현황 및 문제점

1) 발견 및 조사 단계

- 먼저 **아동학대사건 발생 초기**, 조사와 대응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확충이 시급함
 -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현장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간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힘. 또한 신규 입문자에 대해 현장 체험형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등 신규 입문교육 내실화에도 힘쓰고 있음
 - 그러나 지금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격무와 업무가중에 시달리고 있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
-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총 391명에 불과함. 전체 229개 지자체 중 절반에 가까운 102곳 (45%)의 지자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음.**
 - 복지부는 올 10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664명까지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목표치마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복지부에서 설정한 배치기준 자체가 **현장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
 - 현재 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기준은 **연간 아동학대 신고 50건당 1명**
 - 이 기준을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건수에 대입해보면 서울 종로구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단 1명만 배치하면 됨.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담당할 전담공무원 1명과, 현장출동 시 필요한 2인 1조의 전담공무원 2명, 교대근무 등 근무형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 3명의 인력**이 필요함.
 - 올해 1월 기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지자체 127곳 가운데 최소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지자체가 87곳으로, 10곳 중 7곳에 달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기에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치기준 자체를 **현장에 맞게 현실화해야 함.**

2) 분리 및 보호 단계

- 다음으로, **분리 및 보호 단계**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또 실제 학대가 발생한 경우 학대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및 보호 조치 할 수 있는 **쉼터 확충과 주거안정성 확보**가 절실함.
- 정부는 지난달부터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통해, 연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온 아이들을 분리, 보호조치 하고있음. 그러나 문제는 '**즉각분리제도**'를 통해 **분리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함**.
- 복지부는 올해 쉼터 29곳을 확충해 **연내 총 105곳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복지부는 올해뿐 아니라 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쉼터 설치를 진행해왔지만, 지난 수년간 2019년 단 한 해를 제외하고 **목표만큼 쉼터를 설치한 적이 없었기 때문**.
- 쉼터 설치를 위한 지원단가가 낮은 탓에, 지원을 받아도 시설을 마련할 수 없으니 **서울과 인천**에서는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하고 **설치를 포기한 사례**도 발생함.
- 심지어 기존 쉼터 중 무려 16곳은 주거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해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임.
 - 전월세 등 계약 문제로 주거가 불안정 한 곳이 14곳이고,
 - 학대 행위자가 방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이 거주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한 건물에 있는 경우도 4곳임.
- 턱없이 부족한 쉼터 설치비 지원단가, 운영비와 사업비 인상없이 쉼터를 늘리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임.

3) 치료 단계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제도 활성화 필요)

- 학대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단계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최근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음.
- 의료기관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의료지원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제도를 2018년 4월부터 시행함**
- 그러나 올해 초(1월)까지 복지부가 지정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0곳, 지자체 지정의료기관은 포항성모병원 단 한 곳에 불과했음.
- 이마저도 지난해 12월 지정된 곳으로 **제도 시행 3년 동안 학대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통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던 것**.
- 본 의원이, 지난 1월 전국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현황을 공개하고, 뒤이어(2월)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제도 활성화를 당부함.
- 이후 지자체 지정 의료기관은 72곳으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전담의료기관 현황 등 전담의료기관을 통한 치료단계의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 제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절실함.
 - 그러나 현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별 아동 인구,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할 의무가 없고,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 제공이 전무해 의료기관에서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기피하는 상황.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은 학대로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도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 및 시스템 개선이 시급.

4) 사후 사례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 ①발견 및 조사 ②분리 및 보호 ③치료 만큼이나 **사후 사례관리가 중요함.**
 - 그러나 아동학대사건의 사후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1인당 미국 기준의 2배가 넘는 41건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음.**
 - 주말도 없이 하루에 아이 1명씩을 만나도 부족할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음**
 - 그런데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대비 87% 수준으로 낮고, 평균 근속기간은 2.6년으로 이직률 28.5%에 달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재학대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기존 아동학대사례 분석을 통한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도 어려움이 있음.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결실을 위해서는 아보전 상담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전문성 강화가 무척 중요함.

III. 결론

- ①발견 및 조사 ②분리 및 보호 ③치료 ④사후 사례관리 등 각 단계별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장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
 - **발견 및 조사단계**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분리 및 보호단계**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치료 단계**의 전담의료기관, 사후 사례관리 단계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현재 정부의 지원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실질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맞춤형으로 정책기준을 설정하고, 아주 과감한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함.**

- 하지만 올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총 416억원 가운데 90%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과 기재부의 복권기금에서 충당됨.
 - ▲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86.36억, 기재부 복권기금 86.55억, 복지부 42억**
 -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별금과 과태료가 많이 걸려야하고, 복권이 많이 팔려야하는 상황임.
 - 게다가 아동학대대응 관련 대부분의 예산이, 정책수립 주무부처인 복지부 소관 예산이 아니다보니 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타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 아동학대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할 복지부가, 예산구조로 인해 사실상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 본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재부와 법무부로 흩어져 있는 아동학대 예산을 복지부 소관 '아동복지기금'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음.
 - 이후 예산당국과의 협의 끝에 최근 아동학대 예산을 전부 복지부 소관 일반 회계로 편성 하겠다는 보고를 받음.
 - 이제 예산 일원화까지 기재부·법무부·복지부 간 협의가 남은 상황.
 -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함. 온전한 아동보호체계구축을 위한 대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복지부, 법무부 담당자를 포함한 아동복지 관련 각계 전문가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함.

- 앞서 1부의 발제자분들과 2부 토론자분들께서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더이상 학대로부터 고통받고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 이 시스템이 아동학대대응의 모든 단계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일원화 문제에 대해 관심갖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과 심층사례관리 수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김 병 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1. 의미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편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겨난 후 2020년 10월까지의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판단, 조치, 사례관리, 가정복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을 시작으로 경찰 사법권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처를 시작하였으나 아동의 학대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고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것은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였다.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복지개념'의 아동학대에서 '범죄대응' 개념의 아동학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나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사건은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잇따른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을 근절하고자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시작으로 정부는 국가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다시금 잇따르자 2020년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개편을 조속히 시행하게 된다. 이에 현장에서 바라본 국가 아동학대 대응체계전면개편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현장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입장에서 본 학회의 발표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의 의미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의한 사회적 이슈들과 맞물려서 여러 차례 보완과 수정을 반복하였다. 그로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종사자들은 급변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생기고 있다.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 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학대피해아동에게는 의미가 없다. 제도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몇 장의 문서가 아니다. 현장이다. 아동보호의 업무현장에서 실제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우선,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중심으로 몇 년간 진행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편되고 있는 사항들을 몇 가지로 나누면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대책	공권력 강화	아동보호기능 확대	처벌강화와 예방시스템 마련	심층사례관리 실천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18.3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학대조사 공무원 담당	*요보호 전담인력배치 *보호인프라 확대 및 자립지원	*체벌금지 캠페인 *고위험아동 전수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기관 집중 *가족관계 회복 서비스 확대 *원가정복귀 절차 강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20.7월)	*학대전담공무원 신속 배치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치료지원	*지역 정보연계협의체 구성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추진 점검(20.10월)	*조사거부시 과태료 상향 *현장대응인력의 면책 규정 추진 *경찰의 학대전담수사 체계 강화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보호시설 확충 *즉각분리제도입	*처벌강화 및 신고의무자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층 사례관리기관으로 전환
현장중심 아동학대대응체계 강화(21.1월)	*전담공무원, 경찰의 전문성강화 및 처우개선	*아동보호시설 확충 *심리치료지원 *입양절차 개편	*아동학대 처벌강화	

첫째 아동학대 발생시 초기대응의 공권력 강화를 통한 강력한 국가아동보호 기능의 작동이다.

그 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시 초기대응의 미숙, 대응인력의 권한 부재로 인한 아동보호 누락, 민간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의 한계등을 지적하여 왔으며 그 결과 아동학대 대응의 국가책임은 높이고 강한 공권력을 통한 안전한 보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응인력과 체계의 공공화를 추진하였다.

둘째 아동보호인프라 확대를 통한 보호대상아동의 안전한 보호 실현이다.

아무리 강력한 초기대응체계가 작동한다고 해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안전하고 충분한 보호(시설보호, 가정위탁)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아동보호시스템에 의한 2차 학대가 발생하게 되므로 보호인프라 확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완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한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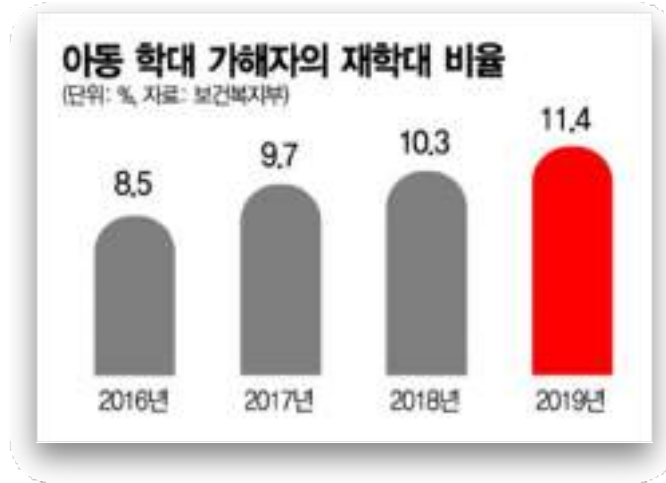
셋째 고위험군 아동의 조기발굴과 아동학대행위 처벌강화를 통한 예방시스템 마련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발생이후 강력한 국가시스템이 작동되는 것과 별개로 예방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고위험군 조기발굴을 통한 사전대응-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강력하고 안전한 보호조치-범죄처벌 강화와 인식개선을 통한 예방’이 대응체계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심층사례관리를 통한 원가정회복과 재학대방지이다.

아동학대 재학대비율은 2017년 9.7%에서 2018년 10.3%, 2019년 11.4%³⁾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2020년 8월



아동학대의 특성상 아동학대 증범죄의 경우 최초 발생만으로 증범죄가 발생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학대상황 속에서 강도가 높아짐을 볼 때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의 회복은 아동학대근절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3. 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가?

시명 선언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중 발췌

20년동안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아동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보편타당한 사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여왔다. 매순간 아동학대의 현장에서 거친 행위자들과 씨름하면서 위축되어있는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업무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빈번한 노출로 인하여 긴장의 연속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다. 이 때문에 업무의 강도와 피로도가 매우 높다. 또한 보호자의 의사와 반하여 아동에 대한 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변의 위협이나 악의적인 민원, 고소고발 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아이들을 위협에서 구한다는 보람이나 사명감만으로 업무를 지속하기에 버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국가아동학대 대응체계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종교에 가까운 헌신과 사명감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아동학대신고와 그로인하여 발견되기 시작한 증범죄 수준의 아동학대 사례들, 그 가운데 학대로 사망하는 아이

들을 볼 때 대응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시스템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인가? 많은 요인들이 있겠으나 크게 2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아동학대 대응인프라가 아동학대 발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2019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2배 이상 증가한데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2개소가 증설되었으며 21년 5월 현재 71개소에 그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내 기본적인 안전망이며 아동학대의 특성상 학대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 1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3~4개의 시군구를 담당하다보니 신속성,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종사자가 담당해야 하는 사례수도 2019년 기준으로 상담원 1인당 평균 64케이스⁴⁾를 담당하고 있다. 치밀하고 촘촘한 아동학대사례관리가 쉽지 않은 업무량이다. 이것은 28.5%라는 매우 높은 상담원 이직률도 나타나고 있다. 인프라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예산이다. 하지만 현재 아동학대 관련 정부예산의 70%이상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필요 따라 유연한 예산집행이나 확대는 어려워 예산운용에 있어서 불안정과 한계가 발생한다.

둘째 상담원의 권한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응의 한계가 있다.

공공화 이전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조사, 판단, 조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는 ‘복지적 판단’을 위한 동의에 기반한 대면·진술조사이다. 조사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고의로 거짓을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처럼 증거를 수집하거나 소환을 하는 등 수사를 하지 못한다. 그로인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아동학대사례에 대하여는 법적 처분이 집행되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강제할 수 없다. 결국 재학대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2019년 포용국가아동정책의 복지부 권고는 32케이스 / 미국아동복지연맹권고 17케이스

4.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으로 충분한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대응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응체계에 대한 전면개편을 정부는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의 파장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와 시범운영이 뒷받침 되지 못한 상태로 진행됨이 있으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의 성패는 현장에 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관이 현장에서 충분한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를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보호된 아동이 안전한 보호처 에서 학대후유증을 회복하고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과정이 주어져야 한다. 한편 즉각분리와 같이 가정에서 분리되어지는 아동들에게는 원가정의 건강한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가정이 회복되지 못하여 가족과 재결합을 하지 못한다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내는 것이 그 아동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경우 아동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학대행위자를 구속시키거나 아동의 집에서 퇴거시킴이 더욱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또한 고위험 위기 아동들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결국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영역이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대응체계는 완성 되는 것이다.



주제 발표를 통하여 보호체계의 진입단계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중심의 개입단계, 사후관리 단계에 대하여 다뤘다면 이제 국가아동보호체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와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제언해 보고자 한다.

5. 심층사례관리기관으로 거듭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제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 학대 피해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학대 피해아동 및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증거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며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보호처분·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의료지원,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가족을 대상으로도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 지원), 원가정 복귀를 위한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제공하고 있다. 또한 20년 10월 1일부터는 시군구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판단, 보호조치업무를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진행하고 그 후 사례관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발표에서 언급된 것처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23년 9월 30일까지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되어있다. 또한 대응체계전면개편에 의하여 심층사례관리기관으로 역할이 변경되어 고도화된 사례관리 매뉴얼에 의하여 심층사례관리를 위한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가중

- 아동복지법 부칙에 의한 23년 9월까지 전담공무원의 조사지원(21년 12월까지 적극지원)
- 전담공무원 신규배치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현장 실습 지원
- 매뉴얼 변경으로 인한 강화된 심층사례관리 실천
- 시군구 필수 회의 증가(아동복지심의위원회, 공공사례회의, 유관기관 연계회의, 사례판단 및 종결회의)
- 원가정복귀 절차 강화에 따른 추가 업무 수행(아동복지법 15조에 따른 분리조치후 가정복귀시)
- 법적처분대상자의 상담위탁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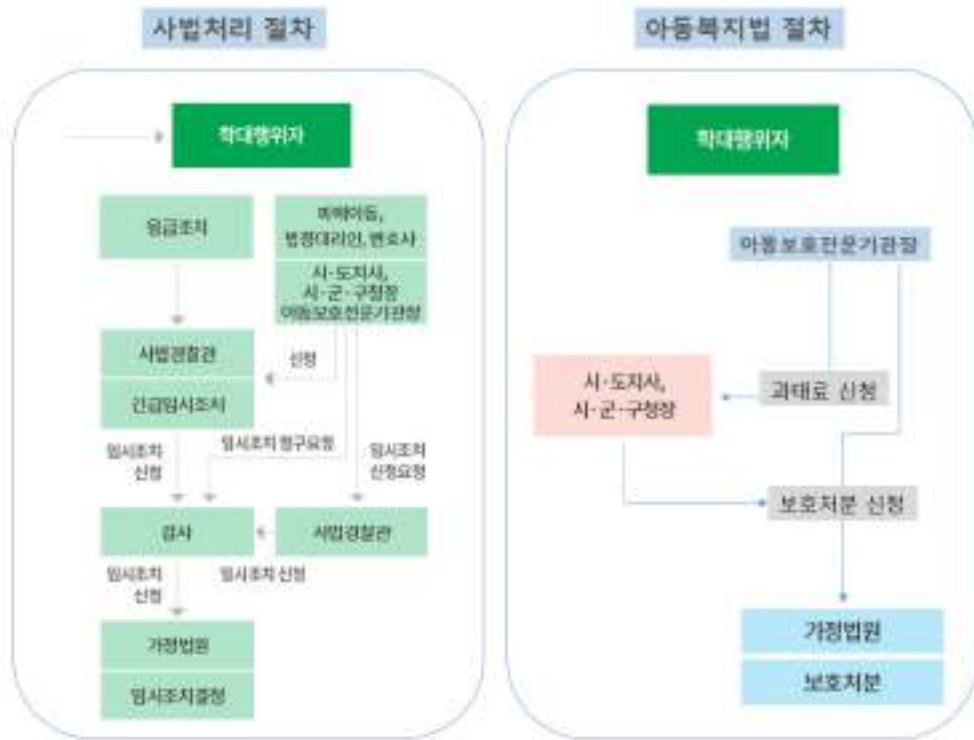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변화에 따라 20년동안의 아동학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고도화된 업무수행과 공공화 안착을 위한 업무지원을 수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사례관리가 조속히 실천되어야만 대응체계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완수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사례관리의 전문적인 실천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업무를 아동복지법상 명시이 필요하다.

토론 3주제에 명시된 것처럼 현재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에 언급 될뿐 구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사례관리의 전반적인 수행의 주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아동학대로인한 보호대상 아동의 재결합 수행 등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사후관리와 사례관리는 절차상 다른 개념이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고도화된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의 기능회복과 재학대 방지, 분리 후 재결합 아동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아동복지법에 정확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법제화 및 가정법원을 통한 사례관리의 강제화가 필요하다.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학대행위자가 거부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강제권한이 없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제성을 부여 할수 있도록 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규정을 촘촘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상의 과태료규정이 6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는 행위자가 아동학대 처벌법상 처분(명령)을 받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아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의 아동학대 처벌법은 학대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곧,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단되지 않으면 그어떤 강제도 할 수 없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다. 단순히 범죄 혹은 면죄의 2가지 길만 남게 된다. 처벌법상 처분을 받지 않는 행위자가 자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는 것은 아동학대 대응체계강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절차인 것이다. 이에 아동학대 처벌법상 처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필요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법상 게이트웨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수행을 위한 인프라확대와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재의 개소수와 인력으로는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사태에 대응하기 어렵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23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확충과 상담원 1인당 사례수 32건수준의 업무환경 구성 계획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업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합하여 평균적으로 3천만원 수준이다. 이 사업비로 관리중인 피해아동들과 가족에 대한 안전점검 상담을 수행하고, 피해아동과 행위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검사·심리치료, 병원진료 및 상담위탁 수행을 수행한다. 본기관의 경우 21년 3월말 현재 725사례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1사례당 4만원 남짓의 금액으로 학대휴유증 치료과 가족기능회복, 재학대 방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의 심리치료 1회기를 진행하는데 회기당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심리치료의 경우 1인당 평균 16회기로 계산하여 80만원이 소요된다면 국비시로 집행되는 사업비 외 추가로 76만원이 필요하게 된다. 각 기관에서는 운영법인이나 후원금을 통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안정적이지 못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현실적인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며 현재 범죄피해자기금, 복권기금, 복지부일반회계로 흩어져있는 아동학대관련 예산을 복지부의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상담원의 처우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관리 수 64건, 기관평균 4개의 시군구 관할, 사례 개입을 위한 평균 이동시간 109.9분 소요⁵⁾, 특히 상담원 1인당 인건비는 3,200만원으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 대비 87.4%수준) 열악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어있다. 그로인하여 28.5%에 달하는 평균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 대응력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담원 1인당 관리 사례수를 20건 내외로 조정(복지부 권고 32건이나 심층사례관리를 위하여 한달에 1번의 가정방문 등을 통한 점검을 위해서는 20사례 내외가 되어야 함.)하고 종사자의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100%수준으로 인상하는 노력으로 아동학대 대응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학대 대응종사자의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중대사건, 악의적인 민원, 신변위협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따라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 대응업무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사무이다. 곧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면책 관련 법안이 발의 되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또한 면책보호관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6. 결론

최근 지역의 아동학대관련 회의시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아동학대예방에 국가가 이렇게 쏟아 붓는데 왜 아이들이 또 죽는거죠?” 본인은 오랜기간 동안 아동학대 업무에 종사하다보니 아동학대란 단순히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다. 형제자매가 3~4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명의 아동에게 학대가 집중되는 사례가 꽤 많다. 그것은 유독 그 아이가 학대를 유발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 가족구성원 전체를 둘러싼 어려움들과 스트레스 상황들이 해소되지 못한 경우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취약한 대상에게 폭력의 형태로 집중되는 것이며 보통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취약한 것은 아이들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단순히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내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을 만드는 것으로 아동학대를 끊어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족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지역사회 안전망 내에서 회복될 수 있을 때 더 이상 학대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이라도 다시금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지역내 여러체계를 통하여 학대 후유증을 치유하고 가족이 기능을 회복하여 다시 아동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가족의 어려움을 살피고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사례관리는 재학대를 막기위한 매우 중요한 과업이

5) 2017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화의 실현만큼이나 미뤄서는 안되는 과업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완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작동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보호 토론

김 영 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1. 아동의 분리가 해결책인가

최근 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간담회에서, 어릴 때 요즘은 학대라고 평가될 가정문제로 분리되어 시설에 있던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아동의 고독사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무서워서 밤에 PC방 가서 잡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여년간 아동학대일을 해오고 사건현장에서, 사법절차에서, 정책현장에서 나름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왔는데, 부끄러움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간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 아동을 그 가정에서 분리를 하지 않아서 아동이 재학대를 당하였다는 결론으로 너무나도 쉽게 이어지고 그로 인해, 심지어 이른바 ‘즉각분리제도’까지 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목적이 재학대 방지에 있는 것일까요.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

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과연 ①아동복지법상 이른바 즉각분리가 실제 아동학대의 대책일 될 수 있는지, ②즉각분리제도가 적기에 아동을 분리해 낼 수 있는 제도인지, ③당사자인 아동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④분리된 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아동의 불안, 아동의 욕구 분석은 어떻게 되고 제공되는 서비스와 필요한 지원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⑤피해아동이 머물게 되는 일시보호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나 기존 아동들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⑥즉각분리에 대해서 절차나 이의신청, 사법적 통제규정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헌법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⑦피해아동의 가정을 지원하는 노력 대신 쉬운 분리에 집중한 것은 아닌지(해당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⑧복귀는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이며, 복귀 후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2. 아동학대를 사법적 조치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최근 법무부에서 아동학대 사건 70% 사법적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통계를 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땅히 행위자에게는 마땅히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며,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이유로 행위자가 선처되거나 가벼운 범죄로 취급되는 일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와 해결은 “현장”과 “아동보호체계”에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인지된 사건이 모두 사법적 조치로 해결되는 것은 오히려 원가정의 회복을 통한 아동보호에 저해되고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양형기준을 제대로 만들어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과는 논의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사법체계가 모든 아동학대를 범죄로 간주하여 무조건 사법적 조치를 타게 하기 보다는, 아동보호체계와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련 법개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동학대를 법적인 측면에서 챙긴다고 할 때 그것은 사법적 조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체계 내에서의 아동권리와 아동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바, 특히 최근 이 부분이 매우 간과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3. 이번에도 이렇게 넘기면 절망입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보호시스템과 궤를 같이 하면서 대응되어야 하고, 이를 인지하고 피해아동과 행위자를 만난 시점에 이미 아동학대를 판단하고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대한 대강의 열개가 짜여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인력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의 제도, 서비스, 자원이 충분해야 하고, 현장인력들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쉼터, 시설, 병원, 인력, 정보 공유 및 업무소통을 위한 통합시스템, 핫라인 등 인프라도 충분히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전국가적 차원에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협의하여 단기, 중기,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와 민간의 전문자원이 총동원되어 현장과 소통하면서 원인규명과 이유를 찾아야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아닌,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고 한탄하고 조용해지고, 몇 년 후 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슬픈 반복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그 사건때마다 정부에서는 곧바로 각종 대책을 발표 하였고 토론회, 간담회 등이 이어졌으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넘기면 절망입니다.

토론문

박 은 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토론문

정 선 희 (법무부 아동인권특별추진단, 검사)

1. 서론

한국아동복지학회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안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에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최근 아동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가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분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상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선진국 수준의 아동인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아동보호체계와 피해아동보호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을 소개하고 임윤령 관장님께서 발표해주신 ‘아동보호체계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협력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듣게 된 소중한 현장의 의견들을 귀담아듣고 향후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및 사법체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아동보호체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역할

임윤령 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이 2017년에는 9.7%였다가 2019년에는 11.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추진단에서 2019년 아동학대사망사건을 전수조사하였는데 그 중 이미 아동학대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2회 이상인 건이 3건이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견 경미해 보이는 학대로 시작되었다가 결국 ‘살인’이라는 중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 행위자의 성행교정이 단시간 내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학대범죄는 다른 범죄들 중에서도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사건이나 중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이런 재

학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19년에 인천에서 계부가 목검으로 5세 아동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학대를 하여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계부는 이미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관리와 재범방지 체계의 허점으로 피해 아동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발표자분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사례관리 과정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사후관리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각 부처에서는 ‘재학대 방지’에 집중해서 중대 사건을 미리 막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에서는 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사후관리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를 관리, 감독하는 보호관찰관과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실질적으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보호관찰 사건 수 및 재범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보호관찰 사건 수 및 재범률(기준 : 건)

연도	전체			보호관찰				
	실사사건	재학대자	재학대률	실사사건	보호처분	집행유예	재범자	재범률
2018년	24,604	2,195	10.3%	1,313	1,177	136	0	0.00%
2019년	30,045	3,431	11.4%	1,287	1,140	147	4	0.31%
2020년	-	-	-	1,356	1,212	144	6	0.44%

일반적인 재학대률에 비하여 보호관찰 중인 학대행위자의 재범률은 현저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만 개입하는 사후관리의 한계에 대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는 보호관찰제도가 그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협업방법으로는 보호관찰소 대상자 정보 공유,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 회의, 기관간 현장에 동행 출장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팀장급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여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아동의 안전을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복지법 상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 공유를 기존 수사기관 외에 보호관찰소까지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려고 합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학대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서로 나누는 분절적인 업무방식을 극복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협업을 한다면

이중·삼중의 보호체계, 보다 촘촘한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의 역할은 지금은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부터 출발하지만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일부분에 들어와 **아동학대 대응주체의 한축으로, 한팀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작년 8월에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주최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의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신수경 변호사님은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판단 만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절차에서 보호관찰소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⁶⁾. 검사와 판사는 결정 전에 **보호관찰소 조사를 통해서 피해아동의 현재의 상황과 보호필요성을 확인하여 검토**한 후 각 결정에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고, 판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보호 명령을 직권으로 개시 할 수 있어 피해아동보호에 더욱 신경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 중 하나로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아동보호사건이 종국적으로 불처분결정 된 경우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 개입이 어려우므로 비교적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행위자가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있더라도 상담 등 조건을 잘 이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없어서 학대행위자가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학대행위자가 이러한 조건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그렇지 않다면 사건을 재기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학대행위자의 재범을 막고, 근본적으로 학대행위자의 성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피해아동보호 강화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모든 학대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선정**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표 2〉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분기별)

구분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
지원 건수	530건	770건	909건	949건	1,974건*

6)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개선방안 간담회, 한국여성변호사회, 2020. 8. 5. 제36쪽

현재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아동 국선변호사가 형사사건 재판은 물론 아동보호사건 재판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 등 아동학대 관련 사법절차에서 아동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사건에서 국선변호사 의무화로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 이외에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선**하고, **신고의무자 직군**을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하여 아동학대 범죄 신고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 때 현장과 동떨어진 허울뿐인 법과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각 부처 담당자 등 현장 종사자와 간담회 등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검찰청에서 아동학대사건 처리를 하면서 각 지역의 아동학대 대응주체들과 모여서 사건 처리의 적정성,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건관리회의**를 **‘피해아동보호’**에도 **초점을 맞춰서 활성화, 정례화**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적정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향후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 두사람이 아닌 **그 지역의 아동학대 대응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체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결론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 계기가 된 ‘이서현 보고서’, 최근에 문제가 된 ‘인천계부목검 살인사건’이나 ‘16개월 입양아 살인사건’을 보면 **학대행위자가 기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사례관리, 개입, 사후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화로 많은 업무와 책임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이 되었지만 임윤령 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적절한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기고 아동보호의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사후관리에도 국가가 개입하여 피해아동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아동학대 처벌법 입법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아동학대사건, 특히 아동이 사망까지 한 중대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아동학대 부분은 누구 하나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구 하나의 실수로만 중대한 결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대응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딸이 8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 아이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가 결국 그 어머니에게 살해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주 유사한 일이 대구

에도 있었는데, 대구에서는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까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 아이의 안전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였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출생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이가 우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습니다.

이후에 대구지검 검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님이 함께 논의하여 아이의 출생신고까지 해주었는데, 최근 그 아이의 근황을 들어보면 학업도 친구들을 따라잡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있다고 합니다.

유사한 환경에 처해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그 아이를 포섭하여 보호해주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국 한 아이의 생사를 가르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면, 결국 **우리의 협업, 협력이 선택이 아닌 의무, 책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김미애 관장님께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많은 아이들의 이름,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셨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은 더 이상 꽃같은 아이들의 희생을 토대로 개정,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방지하고 예방하면서 발전하는 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후원기관 소개

후원기관 아동권리보장원
굿네이버스
삼성복지재단
세이브더칠드런
아산사회복지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아동권리보장원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10조의 2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설립일자 2019.07.16

설립목적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정원 164명

통합된 8개 기관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 아동자립지원단
- ✓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 디딤씨앗사업지원단
- ✓ 실종아동전문기관
- ✓ 중앙입양원

아동권리보장원이 합니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

- ✓ 아동권리보장원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오던 아동복지사업 지원기관을 통합하여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입니다.
- ✓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바탕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 아동권리 증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지원, 아동참여 기반 정책화 지원, 놀이혁신 확산
- 아동정책 수립 지원** 아동정책 수립 지원 및 평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 아동자립** 아동 자립역량 강화, 아동 자산형성사업(디딤씨앗통장)
- 아동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지역 아동보호서비스, 실종아동 예방 및 보호, 가정형 보호지원(입양, 가정위탁)
- 아동돌봄**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71 GE타워 6,7층 / T. 02-6283-0200 / E-mail. nrcr@nrcr.or.kr

후원기관 소개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미션

굿네이버스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굿네이버스는 빈곤과 재난과 억압으로부터 고통 받는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들이 희망을 갖도록 북돋우어 자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략 및 사업 추진 방향

굿네이버스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달성과 GN무브먼트 확대를 주요 전략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전 세계 어디서나 공통된 원칙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3대 사업 추진 방향인 아동권리보호(CRC), 네트워크(Network), 권리옹호(Advocacy)를 중심으로 지구촌 소외된 이웃들의 권리 증진과 지역사회 자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사업 및 활동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예방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그룹홈을 운영하며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상담, 학대 행위자 심리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학대예방에 앞장섭니다.

심리정서지원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위기가정아동지원

빈곤가정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자립통합지원센터, 아동복지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희망나눔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복지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조직화사업을 진행합니다.

아동권리옹호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 조직화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아동권리 개선 이슈를 발굴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옹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교육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지구촌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아동과 부모, 교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지원

협력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생활, 자립, 보건위생, 문화체험, 특기적성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후원기관 소개

삼성복지재단



후원기관 소개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입니다.

비전

우리는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명

우리는 세상이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핵심 가치

①책무 ②포부 ③협력 ④창의 ⑤정직

국내 사업

- **(아동보호)**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며, 학대피해아동과 위탁가정아동을 보호합니다. 아동과 함께하는 기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안전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 **(놀이)** 아동 참여를 통해 농어촌 지역 아동이 방과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놀이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놀이터를 신축하며, 학교 유휴공간을 놀이공간으로 바꾸고 자유놀이시간을 갖도록 지원합니다.
- **(교육)** 아동을 대하는 성인이 아동권리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권리교육을 진행합니다.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를 통해 아동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아동의 성장을 돕는 방법을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 **(보건의료)** 전국 40여개 병원과 협력하여 저소득가정 아동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가정 아동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국내 사업

- **(교육)** 모든 아동이 사회적 편견과 성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전문 교수법을 교육하며 교육공간과 놀이터를 개선합니다.
- **(보건영양)**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5세 미만 아동이 없도록 산모와 신생아, 영유아를 지원합니다.
- **(아동보호)** 아동의 성장을 가로막는 착취, 방임, 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며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사회적 체계 마련에 앞장섭니다.
- **(인도적 지원)** 자연재해, 분쟁 등 인도적 위기상황에 아동 지원을 위해 아동친화공간 운영, 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권리 옹호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생각에 변화를 일으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동 권리에 관한 법, 제도, 정책을 바꿔 나갑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인류에게 가장 큰 두가지 고뇌는 질병과 빈곤입니다.
 질병과 빈곤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빈곤하고 빈곤하기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고와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나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 아산(峨山) 정주명, 1977년 7월 1일 아산사회복지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

아산재단은 정주명 재단 설립자의 이념에 따라 설립 이후 의료사업과 사회복지 지원사업, 의료복지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아산상·아산의학상 시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아산재단 주요사업

사업부분	주요내용
의료사업	서울·강릉·정읍·보령·홍천·보성·금강·영덕 아산병원 운영
사회복지 지원사업	소의 마동·청소년, 공동체 네트워크, SOS 복지지원사업
의료복지사업	저소득환자 SOS 의료비 지원, 의료봉사, 의료기술 전수 등
장학사업	의생명과학 대학원생, M.U. 자녀 장학생, 지역 신학협력 장학생 등
학술연구 지원사업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 지원, 심포지엄
시상	아 산 상 : 복지증진, 봉사과 나눔, 효행 (18명) 아산의학상 : 기초·임상·결론 의과학자 (4명)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재단과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아산재단은 1977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어려운 이웃의 자활과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면서 취약계층 대상자의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사회적 과급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에 집중 지원키로 하고 '발달장애 분야'를 선정하여 5년간 31개 기관의 주거와 일자리, 교육 등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모델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사각지대의 청소년이 걸출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각 8개 기관씩, 16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2021년에도 10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기관별로 연간 1억 원씩 3년간 연속 지원함으로써 협력기관들이 안정적 사업운영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성과를 확산·공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19년 선정기관	2020년 선정기관
<p>(사)서울구로로케아인이경회회 (서울 구로구) 문회스와 아동 대상 영화교육 진행 및 영화제 개최</p> <p>(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서울 중구) 그룹홈 틈새 및 원가족 복귀 아동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p> <p>김해시충원사회복지관 (경남 김해시) 꿈드림국형소년 사회적응력 및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p> <p>미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서울 미포구) 지치지와 함께하는 시실티스형소년 통합적 자립지원 사업</p> <p>미래엔미소클럽 (대구 서구) 정신질환 형소년 대상 지역사회 형소년 자활 서비스</p> <p>차단법인 비후비 (서울 성동구) 형소년 비혼부모 지원을 위한 모바일 친 및 콘텐츠 개발</p> <p>신정동원사회복지관 (서울 양천구) 달백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연계형 통합지원 프로그램</p> <p>이주인종말지원센터 (광주 광산구) 광주 고려인 아동 관계 개선 및 진로 찾기 프로그램</p>	<p>(사)디티에스형북홀고나 (서울 노원구) 경제선 지능 형소년 대상 농업기술을 전파한 직업보도 개발</p> <p>(사)세연회 (경기 수원시) 보호시설 틈새 형소년 관계형성과 비형제형을 통한 사회적응 지원</p> <p>(사)연아온대이션 (서울 성북구) 달북형소년 예술교육과 진로지원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지원</p> <p>교육공동체 제크 (서울 도봉구) 노숙과 주거불안을 겪는 위기형소년의 사회적 자립 프로그램</p> <p>사회복지법인 자활의심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 기술과 수공예를 융합한 학교형 형소년 일터 개발</p> <p>한성동원사회복지관 (대구 동구) 지역 형소년 시민의식 함양과 연대 경험을 통한 시민영양제 육성</p> <p>창동동원사회복지관 (서울 도봉구) 경제선 지능 미취학 아동 학습지원을 통한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p> <p>한학동원사회복지관 (인천 연수구) 고려인 아동 놀이문화 환경 조성다 학습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p>

* 문의 : 아산사회복지재단 [02-3010-2583 / www.asanfoundation.or.kr]



아산사회복지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2011년 설립된 아동 NGO 최초의 연구소입니다.

아동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실시, 아동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를 리딩하는 아동복지포럼 개최 등 아동 옹호활동을 위한 다양한 근거자료를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① 연구조사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관련한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며, 아동정책 개선 및 인식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친환경 행동실태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의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	이주민 밀집지역 아동의 발달권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연계 모델에 관한 연구	예학순상 아동·청소년의 효과적 건인치료
아동주거환경가구 주거지원효과성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한국 아동권리의 현주소 -동상어울, 부모자녀 아동권리인식 비교-	“아동이 행복한 동네” 지표 개발 연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결혼, 자녀 가족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② 아동복지포럼

아동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이슈를 정부·학계·현장전문가·일반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아동복지포럼을 개최합니다.



③ 동광

1957년 첫 발행된 아동복지전문연구지 동광은 시의적절한 아동 이슈를 주제로 한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학계와 현장을 소통합니다.



④ 연구지원사업

아동 분야의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를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옹호를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합니다.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홈페이지 > 재단소개 > 아동복지연구소 페이지에서 연구소 발간 자료를 포함한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hildfund.or.kr/institute/intro.do>)

한국수력원자력(주)



2. 대표적 사회공헌사업



행복더함 희망나래

-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선도
- 행복·안전 구현을 위한 한수원 사회공헌 사업의 대표성 강화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활동기반의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개선으로 행복을 더하고 **계속이동(희망)의 기회(날개)**를 제공한다는 의미

○ 지원 현황('12~'20)



안심가로등

- 취약계층 밀집지역 주민 안전보호 및 범죄예방
- 방범취약 지역 안심가로등 설치로 잠재적 범죄자 혼동 약화 및 시야 확보로 차량 추돌 위험 감소
- 본책 관련 사회공헌 대표사업으로 지속 추진

※ 범죄예방환경설계 :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

○ 지원 현황('12~'20)



2. 대표적 사회공헌사업



'키다리아저씨' 프로젝트

- 학업, 예체능 분야에 재능은 있으나 성장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경제적·정서적 후원

○ 후원 개요

- ▶ 대상 : 광주 저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10명
- ▶ 기간 : 후원 시점부터 만18세까지
- ▶ 후원 : 매월 정기지원 / 1인당 30만원
 참여임직원 180명 300구좌(1인원/1구좌)



경주 빛누리(LED) 정원 조성

- 한수원 본사 이전의 가시적 효과와 **경주시민 대상 사회공헌 체험**을 위해 경주시에 사업제안 추진

○ 사업 개요

- ▶ 사업 : 경주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LED정원 조성
- ▶ 위치 : 광성공원 내 한중우호의 숲 일원 (4,952㎡)
- ▶ 목적 : 시민 휴식·발달공간 + 문화관광대매 체류



행복에너지 나눔

경주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냉방권 확보 지원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발행일 2021년 5월

발행 한국아동복지학회

01369 서울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사회복지학 전공 정선욱 교수 연구실

Tel. 010-7522-1866 childwelfare07@hanmail.net

편집디자인 · 인쇄 EM실천

TEL : 02)875-9744

FAX : 02)875-9965

<http://www.em21c.com>

em21c@hanmail.net

